
2023년도 철원군 정기 종합감사
처 분 요 구 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 원)	
계			30건	계 30 시정 17 주의 12 통보 1	계 추징 회수 감액	709,353 120,839 132,514 456,000	계 27 경징계 5 훈 계 22
1	□□□	'20~'21	교육훈련 운영 소홀	시정	-	-	경징계 2 훈 계 2
2	□□□	'20~'23	인사 운영 부적정	시정	-	-	-
3	△△△	'20~'22	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 소홀	주의	-	-	-
4	◇◇◇	'20~'23	철원■■■재단 지도·감독 소홀	주의	-	-	-
5	○○○	'20~'23	장애인 ■■■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	시정	-	-	훈 계 2
6	○○○	'20~'23	기초연금 환수 및 노인복지 시설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7,680	-
7	○○○	'20~'23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4,078	-
8	☆☆☆	'20~'23	정수장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시정	-	-	훈 계 4 (28번 병합 1)
9	◎◎◎	'20~'23	예산편성 및 운영 소홀	주의	-	-	-
10	@@@	'20~'23	공유재산 대부 업무 소홀	시정	추징	19,341	-
11	@@@	'21~'23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316	-
12	◆◆◆	'19~'22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세 부과 소홀	시정	추징	101,498	-
13	□□□	'20~'2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주의	-	-	훈 계 1
14	@@@ □□□	'22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	-	경징계 2 훈 계 1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 원)	
15	@@@ 등 3개 부서	'21~'22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소홀	시정	-	-	-
16	@@@ 등 11개 부서	'20~'23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	-
17	☞☞☞	'20~'22	화강 ■■축제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훈 계 2
18	◇◇◇	'22	2022 DMZ ■■페스티벌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훈 계 1
19	◇◇◇	'22	제00회 철원 DMZ 국제평화 ■■ 개최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
20	●●●	'20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훈 계 2
21	♠♠♠	'20	축산농가 장비 지원 추진 부적정	시정	-	-	-
22	♡♡♡	'21	철원자전거 및 한탄강 걷기 대행진 추진 부적정	주의	-	-	-
23	●●●	'20~'23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시정	-	-	훈 계 2 (24번 병합 1)
24	●●●	'21~'22	불법 전용농지 및 농막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	-	훈 계 2 (23번 병합 1)
25	▽▽▽	'20~'2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 조사 부적정	주의	-	-	경징계 1
26	건설도시과	'20~'23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통보 (모범사례)	-	-	-
27	▽▽▽ 등 10개 부서	'20~'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시정	회수	60,440	-
28	△△△	'20~'23	2020년 재해복구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시정	회수 감액	58,000 456,000	훈 계 2 (8번 병합 1)
29	◇◇◇	'20~'23	철원 ■■스튜디오 건립 추진 부적정	주의	-	-	훈 계 3
30	▽▽▽	'20~'23	경관심의 및 조례 운영 부적정	시정	-	-	-

[일련번호: 01]

강원특별자치도

징계·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육훈련 운영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징계대상자 ① 철원군 □□□	지방-----	●●●
② 철원군 ■■■■	지방-----	▲▲▲
※ 훈계대상자 ① 철원군 ☁☁☁(전 □□□)	지방-----	■ ■ ■
② 철원군 🌈🌈🌈(전 □□□)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철원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

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철원군(□□□)는 불임과 같이 3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실적 331시간을 중복 입력 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11명에 대하여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충족하여 당해 승진심의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승진임용되었고, 교육훈련 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상시학습 미충족자의 승진의결 현황

의결일자	승진인원	심의 대상자(당시)					심의결과	상시학습 충족여부
		소속	직위(급)	성명	현직급	순위		
합계		11명(0급 0명, 0급 0명, 0급 0명, 0급 0명)						
'20. 6.00.	1명 (--0급)	-	-	-	'04. 7.00.	6위	승진	미충족
'21. 2. 0.	1명 (--0급)	-	-	-	'07. 1. 0.	5위	승진	미충족
'21. 2. 0.	8명 (--0급)	-	-	-	'15. 3.00.	21위	승진	미충족
'21. 2. 0.	11명 (--0급)	-	-	-	'17. 7.00.	1위	승진	미충족
'21. 2. 0.	1명 (--0급)	-	-	-	'18. 4.00.	1위	승진	미충족
'21. 2. 0.	7명 (--0급)	-	-	-	'17. 7.00.	4위	승진	미충족
'21. 2. 0.	2명 (--0급)	-	-	-	'18. 9. 0.	3위	승진	미충족
'21. 2. 0.	3명 (--0급)	-	-	-	'18. 7. 0.	3위	승진	미충족
'21. 4. 0.	3명 (--0급)	-	-	-	'18. 9. 0.	1위	승진	미충족
'22. 8.00.	11명 (--0급)	-	-	-	'20.11. 0.	9위	승진	미충족
'22.12.00.	8명 (--0급)	-	-	-	'18. 4.00.	6위	승진	미충족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철원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2020. 3. 1.부터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관련자의 임의진술과 문답 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고의로 부정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별 학습실적을 비롯하여 교육훈련기관 실적에 이르기까지 소속직원 600여명의 모든 교육실적을 주관부서인 □□□의 실무자 1명이 입력 및 승인하도록 되어있음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 과중에 따른 중복 입력으로 판단 된다.

철원군 □□□ 지방----- ●●●●은 2020. 00. 0.부터 2021. 0. 0.까지 □□□□로 근무하면서, 교육 실적 88시간을 중복입력하여 2명의 부적격자가 승진임

용(--0급, --0급)되었고, 입력된 교육실적에 대한 확인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승진심사 기준일인 2021. 2. 0. 교육실적 미충족자 7명이 승진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철원군 ■■■(전 □□□) ▲▲▲은 2022. 0. 0.부터 2022. 0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9명에 대하여 교육실적 86시간을 중복입력하고 그 중 2명의 부적격자가 승진임용(--0급, --0급)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철원군 ☼☼☼(전 □□□) 지방----- ■■■는 2020. 00. 00.부터 2021. 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상시학습 실적 업무 처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실적 미충족자 8명이 승진임용되었으며,

철원군 ☼☼☼(전 □□□) 지방----- ★★☆☆은 2021. 0. 0.부터 2022. 0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실적 미충족자 2명이 승진임용 되는 등 입력된 교육실적에 대한 확인 등 점검을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하여 중복·오류·부정 입력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훈련 중복 입력 현황

(단위: 시간)

대상자	승진직급	승진 심사일	중복 등록일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복 입력자
				필요시간 (A)	인정시간 (B)	중복입력 (C)	실제인정 (B-C)=D	충족여부 (부족, A-D)	
합계	30명	미충족자: 11명(0급 0, 0급 0, 0급 0, 0급 0) / 충족자: 19명							
000	0급→0급 (--)	20. 6.00.	09. 5.11. 10. 6.13.	926	935	25	910	미충족(16)	-
000	0급→0급 (--)	20. 6.00.	19. 7.26.	926	943	1	942	충족	-
000	0급→0급 (--)	20. 8.00.	16.12.12.	740	762	1	761	충족	-
000	0급→0급 (--)	20. 8.00.	22.10.24.	146	157	8	149	충족	-
000	0급→0급 (--)	20. 8.00.	21. 6.22.	146	185	4	181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16. 3.21.	726	728	2	726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16. 8.29.	466	480	2	478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18. 1. 2.	793	813	6	807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19. 6.19.	220	222	2	220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19. 6.13.	220	246	4	242	충족	-
000	0급→0급 (--)	21. 2. 0.	20.12. 3.	466	470	8	462	미충족(4)	-
000	0급→0급 (--)	21. 2. 0.	20. 7. 4.	280	282	20	262	미충족(18)	-
000	0급→0급 (--)	21. 2. 0.	20. 5.11.	280	294	30	264	미충족(16)	-
000	0급→0급 (--)	21. 2. 0.	18.11.31.	218	226	19	207	미충족(11)	-
000	0급→0급 (--)	21. 2. 0.	20. 7.28.	186	189	5	184	미충족(2)	-
000	0급→0급 (--)	21. 2. 0.	20. 8. 5.	112	121	20	101	미충족(11)	-
000	0급→0급 (--)	21. 2. 0.	20.12. 2.	980	996	80	916	미충족(64)	-
000	0급→0급 (--)	21. 4. 0.	19. 4.26.	199	199	2	197	미충족(2)	-
000	0급→0급 (--)	21. 6.00.	21. 4.14.	125	132	2	130	충족	-
000	0급→0급 (--)	21. 6.00.	16.11.14.	565	579	8	571	충족	-
000	0급→0급 (--)	21. 6.00.	22. 4. 8.	165	189	2	187	충족	-
000	0급→0급 (--)	21. 6.00.	21. 8.17.	171	184	2	182	충족	-
000	0급→0급 (--)	22. 8.00.	22. 3.21.	123	141	1	140	충족	-

대상자	승진직급	승진 심사일	중복 등록일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복 입력자
				필요시간 (A)	인정시간 (B)	중복입력 (C)	실제인정 (B-C)=D	충족여부 (부족, A-D)	
000	0급→0급 (--)	22. 8.00.	22. 4.13. 22. 1.23.	123	140	38	102	미충족(21)	-
000	0급→0급 (--)	22. 8.00.	22. 5.20.	123	145	4	141	충족	-
000	0급→0급 (--)	22.12.00.	22. 7.13.	210	234	8	226	충족	-
000	0급→0급 (--)	22.12.00.	21.10.29.	156	171	2	169	충족	-
000	0급→0급 (--)	22.12.00.	22.12.15.	1,110	1,126	2	1,124	충족	-
000	0급→0급 (--)	22.12.00.	22. 8.15.	228	233	11	222	미충족(6)	-
000	0급→0급 (--)	22.12.00.	22.12.15.	85	99	12	87	충족	-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인사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가.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0년 상반기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 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4개 평정단위 6명에 대하여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현황

연도별	평정단위	대상직급	성명	단위순위	전체순위
계	평정단위 4개, 순위변경 6명/ 확인불가 3명				
2020년 상반기	-	--6급	000	5	49
			000	6	47
	-	----6급	000	1	-
			000	2	-
			000	3	-
2022년 상반기	-	--6급	000	4	100
			000	5	89
	-	--7급	000	3	28
			000	4	27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0년 상반기 - 평정단위의 ---- 0급의 경우 전체 평정순위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순위 반영의 적정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게 하였다.

나. 자격증 가산점 평정 미 실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 2 관련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에는 근무 평정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일반직 공무원이 직급별로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가산점 평정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자치법규 등으로 가산점 평정 대상 자격증을 정하

고 있으면서도 2020. 0. 0.부터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소속 직원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가산점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근무평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일실했다.

2. 직렬 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서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 시행규정」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위·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는 [표 2]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과 부합하지 않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였다.

[표 2] 직렬 불부합 임용 현황

부 서	직 위	정원(직렬·직급)		임용사항			
		직 렬	직 급	임용일	직 렬	직 급	성명
-	-	농촌지도관	지도관	2021. 0. 0.	행정	4급	000
-	-	행정·시설	6급	2023. 0. 0.	세무	6급	000
-	-	행정·공업·환경	6급	2022.00.00.	전산	6급	000

부 서	직 위	정원(직렬·직급)		임용사항			
		직 렬	직급	임용일	직렬	직급	성명
-	-	행정·시설	6급	2022.00.00.	전산	6급	000
-	-	행정·환경	6급	2023. 0. 0.	공업	6급	000
-	-	행정·시설	6급	2022.00.00.	세무	6급	000
-	-	행정·농업·시설	6급	2021. 0. 0.	의료기술	6급	000
-	-	행정·사회복지·농업	6급	2023. 0. 0.	세무	6급	000
-	-	행정·사회복지	6급	2023. 0. 0.	공업	6급	000
-	-	행정·농업·시설·지도사	6급	2023. 0. 0.	공업	6급	000
-	-	행정·세무	6급	2022. 0. 0.	전산	6급	000
-	-	행정·전산·시설	6급	2021. 0. 0.	농업	6급	00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전출 제한 기간 중 소속 직원의 전출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수립한 인사운영계획¹⁾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4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5년 이내 전출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1) 202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00000호(2020. 00. 00.)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00000호(2021. 00. 00.)

그런데 철원군(□□□)는 [표 3]과 같이 소속직원 2명이 임용 이후 전출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일방전출을 허용하는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표 3] 전출제한 기간 내 전출자 현황

부 서	직 급	성명	최초임용	전출일	전출지	사유
-	-	000	2017. 9.00.	2021. 2. 0.	경기 000시	-
-	-	000	2017. 9.00.	2021. 8. 0.	경기 000시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자격증 가산점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5]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동일 평정단위 서열의 변경 불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직렬별 정원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사운영계획(전출제한 기간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업무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벽지 노선 운행 손실의 보전,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여객 터미널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여객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10월 31일 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해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 까지 관내 노선 운행 손실의 보전,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 여객 운수사업 발전을 위하여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관련법에 따라 2021년에 2회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 금5,000천 원을 징수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2. 과징금 납부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법」 제21조 및 제24조, 제85조, 제88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자격 요건 등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해진 각종 준수사항 및 자격 요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면허나 허가의 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이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에 따르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원군(△△△)은 노선과 배차문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운송사업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 혹은 허가 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처분이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사업자로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2021.11.0.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사항으로 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발되어 운송사업자인 철원군수에게 과징금 금2,500천 원을 처분하였고 이를 철원군(△△△)은 이를 납부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 제72조 제2항²⁾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법 제73조제1항제3호³⁾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와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58개자동차관리사업

2)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자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 [표]와 같이 분기마다 실시하지 아니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지도·점검 실시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분 기	2	3	4	1	2	3	4	1	2	3	4	1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	×	× (코로나)	× (코로나)	×	×	×	×	×	×	×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 2020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도·점검 보류 요청에 따라 미실시
(강원특별자치도 ■■■과-0000(2020.3.0.)호, 00000(2020.8.00.)호)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구분	합계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소계	종합	전문	소형		
자동차관리사업자	58	53	7	43	3	5	-

[일련번호: 04]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철원■■■재단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정에 따라 2021. 9. 0. 주무관청인 강원특별자치도(■■■과)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철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철원■■■재단 일반현황

법인명칭	재단법인 철원■■■재단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철원군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일	2021. 9. 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면 ----로 0
인원현황	이사 13명(이사장 1포함), 감사 2 직원 16(파견공무원 4포함), 기간제근로자 13명
주요기능	1.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지역 내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관리 5. 문화예술 등과 관련한 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운영·관리 7. 그 밖에 재단의 성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하 “주무관청⁵⁾”이라 한다)에 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철원■■■재단이 재단정관이나 규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개정·변경·폐지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내지 협의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과)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재단이 [표 2]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과)의 허가 없이 철원군(◇◇◇)의 협의만 이행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2] 철원■■■재단 정관변경 및 허가 내역

구분	현행	개정	도 허가	철원군 협의
개정 '22.1.21.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② 신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② 당연직 이사는 철원군의 문화예술 및 축제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각각 1명으로 한다.	허가 사항 없음	◇◇◇ -0000 (2022.3.00.)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

구분	현행	개정	도 허가	철원군 협의
	제30조(이사회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2.10.18.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임원중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 없음	◇◇◇ -00000 (2022.10.100)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u>총회의</u>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u>이사회</u> 의 의결을 거쳐 <u>군수가</u>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u>	제28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이사장 추천, 대표이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u>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u>허가</u> 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주무관청과 협의</u>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u>주무관청에 통보</u> 하여야 한다.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직원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소관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및 채용인원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수는 철원■■■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단의 채용 적정성 및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통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철원■■■재단이 [표 3]와 같이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을 채용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협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철원■■■재단 직원채용 협의 절차 부적정 현황

채용부문	채용계획 결재일	공고일자	협의 이행일	부적정 사항
기간제 근로자	철원■■■재단-0000 (2022.11.23.)	2022.12.02.	◇◇◇-00000 (2022.11.00.)	협의 기간 미준수 (공고예정일 15일전)
기간제 근로자	철원■■■재단-000 (2023.02.07.)	2023.02.15.	◇◇◇-0000 (2023.02.00.)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위탁관리 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수는 철원■■■재단에 위탁관리한 재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자까지 보고 받아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4]와 같이 철원■■■재단이 철원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감사일 현재까지 보고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4] 관리위탁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및 공개 현황

연번	시설명	추진실적 보고		관리위탁 현황공개		비고
		2022	2023	2022	2023	
1	----문화센터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공개 없음	공개 없음	
2	----- 작은영화관	〃	〃	〃	〃	
3	----- 작은영화관	〃	〃	〃	〃	
4	----하우스	〃	〃	〃	〃	
5	-----레지던시	〃	〃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철원군 장애인 ■■■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철원군 ■■■(전 ○○○) 지방----- ●●●

② 철원군 ○○○ 지방----- ▲▲▲

철원군(○○○)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원군 장애인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 및 지도·감독하고 있다.

1. ■■■센터 지도·점검 미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센터에 대하여 최근 3년 동안 총 3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미실시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센터 지도·점검 실시 현황

시설명	지도·점검 실시 여부		
	2020년	2021년	2022년
철원군 장애인 ■■■센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센터 예·결산 미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및 「사회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센터에서 [표 2]와 같이 시설 예·결산서를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센터 예·결산서 제출 및 공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시설명 (설치일)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비고
		제출일 (시설→市)	공고여부 (市)	공고여부 (시설)	제출일 (시설→市)	공고여부 (市)	공고여부 (시설)	
2020	철원군 장애인 ■■■센터	X	X	X	X	X	X	
2021		X	X	X	X	X	X	
2022		X	X	X	X	X	X	
2023		X	X	X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센터 예산편성 부적정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 미흡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25조, 제29조에서는 시설의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센터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을 상시 기록 비치하고,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철원군 장애인 ■■■센터 운영규정(2019. 4. 11.개정)에서는 ■■■센터는 철원군 등록 장애인이 출·퇴근, 병원 이용, 외출 및 나들이 등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 징수규정⁶⁾에 따른 이용료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센터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지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센터에서 [표 3]과 같이 사업수익(이용료)에 따른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6) ■■■센터 차량이용료 징수규정 제3조

- (1) 관내운행이라함은 철원군내와 지역이용의 편의상 운천까지로 하며 무료운행한다.
- (2) 관외운행은 강원 및 서울, 경기북부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에 준한다.
 - ① 서울 : 30,000원, ② 춘천 : 30,000원, ③ 의정부 : 20,000원, ④ 포천 : 10,000원,
 - ⑤ 그 외 지역 : 시외버스요금
- (3) 요금은 왕복요금이며 편도만 이용할시 1/2만 징수한다.
- (6) 이용료는 기사(운전직원)가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수납된 이용료는 회계처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 (8)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징수한다.

2) ■■■센터 차량이용료 징수규정 제4조

- (2) 회원 및 임원이 각종 행사 및 협회공무관계로 이용시는 무료로 한다.

[표 3] ■■■센터 사업수익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원)

연도	계좌 내역	계좌현황	이월액 (A)	사업수익 (B)	지출액 (C)	잔액 (A+B-C)	세입예산 편성액
'20년	사업수익 통장	농협 ----- (예금주 : -----)	1,082,458	3,693,755	2,355,348	2,420,865	미편성
'21년			2,420,865	3,543,681	3,348,691	2,615,855	미편성
'22년			2,615,855	3,355,506	4,187,140	1,784,221	미편성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또한 차량 사업수익에 대하여는 차량을 이용한 자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요금을 현금으로 운전직원에게 지불하고 운전 직원은 이용자에게 받은 이용료를 익일까지 센터 사업수익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현금수령분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4일이 지난 후 일괄 입금조치하는 등 수입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센터 사업수익 세입 조치 지연 현황

(단위 : 건)

구 분	사업수익 입금 지연처리 건					세입 지연기간 ⁷⁾	비 고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15	25	28	30	32		
2020년	37	7	8	12	10	1일 ~ 38일	
2021년	42	10	12	10	10	1일 ~ 31일	
2022년	36	8	8	8	12	1일 ~ 44일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아울러, 철원군(○○○)은 ■■■센터에서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업수익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표 5]와 같이 사업수익 외 보험환급금 등이 입금되고, 별도의 기준없이 과태료, 부조금,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데도 감사기간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7) 세입지연일 : 수납 후 세입처리 기간 중 주말, 휴일을 포함하여 산출

[표 5] ■■■센터 사업수익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연도	입·출금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입·출금 내역	비고
2020	4.00.		157,220	퇴직적립금 정산	
	9.00.	53,980		보험환급금(----)	
	7.00.	37,060		보험교통비	
2021	1.00.		353,080	퇴직적립금 정산	
	3.00.		32,500	과태료	
	5.00.		115,290	보험변경 추가금(----)	
	7.00.		32,500	과태료	
	8.00.		32,500	과태료	
	9.00.	13,470		보험료환불금(----)	
2022	1.00.		381,430	연장근로수당	
	3.00.		55,800	여비(000)	
	4.00.		422,920	퇴직적립금(000)	
	5.00.		100,000	부조금	
	6.00.		73,000	과태료	
	6.00.	200,4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사업에 대한 후원금을 받기 위해 ■■■센터 통장 잔액을 차량수입 통장으로 이체	
	6.00.		500,000	차량수리비 자부담(----)	
	10.00.		601,540	자동차보험(----)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이에, 철원군 ■■■(전 ○○○) 지방----- ●●●은 2017. 0.00.부터 2021. 0. 0.까지, ○○○ 지방----- ▲▲▲는 2021. 0. 0.부터 2022.00.00.까지 각각 □□□□로 근무하면서 ■■■센터에서 예·결산서를 미보고하고 사업수익을 길게는 44일이 지나서야 입금조치하거나 예산에 미편성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철원군 장애인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고 센터에서 사업수익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사업수익금을 과태료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170,500원에 대해 사업수익 전용 통장으로 여입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장애인 ■■■센터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6]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기초연금 환수 및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및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미환수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시장·군수는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고, 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초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는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 또는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 처리 또는 정지 등 환수 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압류의 절차로 환수하여야 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한 시군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기초연금 부정수급 또는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환

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감사 기간이 되어서야 AAA 외 2명에게 사망이후 기초연금 915천 원이 과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

[표 1] 기초연금 과오지급 및 환수 진행 현황

(단위: 원)

지원대상자			과오지급 현황		과오지급 사유	조치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기간	금액		
계				915,000		
AAA	'00.00.00.	'00.00.00.	'21.00.	300,000	사망 이후 지급	없음
BBB	'00.00.00.	'00.00.00.	'22.00.	307,500		
CCC	'00.00.00.	'00.00.00.	'22.00.	307,000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지도·감독 소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⁸⁾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적립하되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까지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도·점검 시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8) 특정목적사업 : 운영충당적립금(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동을 위한 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따라서 철원군(○○○)은 '장기요양기관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 실태 등에 대해 반드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2]와 같이 A센터에서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으로 222,000천 원을 적립·관리하면서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추후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정목적사업비를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종신보험 상품에 적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B센터에서는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시정 요구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장기요양기관 특정목적사업 적립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시설명	적립기간 / 1회 보험료	적립금액	사용계획 사전 보고	특별회계 편성 여부	사용 여부	비고
2개 시설			230,200				
A센터	소계		222,000				
	운영충당금	'21.7.~'23.3. / 1,000	24,0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21.1.~'23.3. / 1,500	40,5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20.9.~'23.3. / 1,500	46,5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환경개선준비금	'21.7.~'23.3. / 1,000	24,0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21.1.~'23.3. / 1,500	40,5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20.7.~'23.3. / 1,500	46,500	미보고	편성	미사용	종신보험
B센터	소계		8,200				
	운영충당금	'21.1.~'23.3. / 150	6,550	보고	미편성	미사용	
	환경개선준비금	'21.1.~'23.3. / 150	1,650	보고	미편성	미사용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기준(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만 60세 미만 종사자⁹⁾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의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지원되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3]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DDD 외 3명에게 복지수당 6,765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는데도 회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시설명	종사자			기 지급액	적정 지급액	과다 지급 내역	부적정 지급 사유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10,995	4,230	6,765	
-	DDD	'00.00.00.	'20.00.00.	3,750	0	3,750	개인사설 시설장
-	EEE	'00.00.00.	'21.00.00.	1,800	0	1,800	개인사설 시설장
-	FFF	'00.00.00.	'17.00.00.	4,320	3,780	540	경력 산정 오류
-	GGG	'00.00.00.	'18.00.00.	1,125	450	675	연령 도래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9)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종사자는 만 60세 도래하는 달까지, (법인에서 고용된) 시설장은 만 65세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이후 지급된 915천 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수당 6,765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그 환수 절차는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결정 통지, 독촉, 체납체분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¹⁰⁾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명단 및 사후관리 철저를 연 2회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을 인지 할 경우에는 즉시 급여를 지급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1]과 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AAA 외 6명에게 과오지급된 양육수당 4,750천 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양육수당 환수 권리 소멸시효 규정(5년)에 따른 권리 기간을 경과하여 과오지급된 양육수당 4,750천 원 중 2,550천 원은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장기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미환수 내역

(단위 : 천 원)

대상자				환수 절차 이행 여부			90일 시점	소멸시효 완료시기
성명	생년월일	과오 지급액	과오지급기간	사전 처분 통지	환수 결정 통지	독촉 고지		
계		4,750						2,550
AAA	'00.00.00.	100	'16.10.	N	N	N	'16.09.00.	'21.10.
BBB	'00.00.00.	450	'17.01.~'17.03.	N	N	N	'16.12.00.	'22.01.

10) 소멸시효 :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대상자				환수 절차 이행 여부			90일 시점	소멸시효 완료시기
성명	생년월일	과오 지급액	과오지급기간	사전 처분 통지	환수 결정 통지	독촉 고지		
CCC	'00.00.00.	1,900	'16.10.~'17.12.	N	N	N	'16.09.00.	'21.10.
DDD	'00.00.00.	100	'17.05.	N	N	N	'17.04.00.	'22.05.
EEE	'00.00.00.	800	'18.08.~'19.03.	N	N	N	'18.07.00.	
FFF	'00.00.00.	800	'20.05.~'20.12.	N	N	N	'20.04.00.	
GGG	'00.00.00.	600	'18.08.~'19.01.	N	N	N	'18.07.00.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보육교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2]와 같이 A 외 1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¹¹⁾ 이외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음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데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11) 중간정산 사유 : ①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⑥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시설명	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원)			중간정산 사유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중간정산		현 적립 잔액	
A	-	'00.0.00.	'05.00.00.	'22.02.00.	11,412	7,277	---- 등록금
	-	'00.0.00.	'07.00.00.	'22.02.00.	13,207	3,736	
	-	'00.0.00.	'21.00.00.	'23.02.00.	2,300	2,085	
B	-	'00.0.00.	'03.00.00.	'13.04.00.	2,170	17,189	---- 선정으로 급여 상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	'00.0.00.	'12.00.00.	'15.02.00.	1,485	14,038	
	-	'00.0.00.	'15.00.00.	'17.12.00.	2,600	11,744	
	-	'00.0.00.	'19.00.00.	'20.09.00.	2,027	5,927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보조율

유형별 지급기준	인건비 보조율	세 부 내 용	비 고
원장	80%		
영아반(0~2세) 교사	80%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유아반(3~4세) 교사	30%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따라서 철원군(○○○)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정산할 때에는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교부 및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4]와 같이 C에서 보육교사 2명에게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하여 적정 교부액보다 1,877,920원을 과다 교부하였는데도 감사기간에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보조율 미준수 현황(과다지급)

(단위: 원, %)

어린이집명	성명	보조율		지급 기준	보조교사 인건비 교부내역		과다 교부액 (A-B)
		기교부	규정		기교부(A)	적정교부(B)	
계							1,877,920
C	-	80	30	유아반(3~4세)	1,692,000	757,310	938,960
	-	80	30	유아반(3~4세)	1,692,000	757,310	938,960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4.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철원군(○○○)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표 5]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정보공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종합감사 기간에야 공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5]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황

어린이집 명	정보공시 항목	영유아보육법상 공시 시기	'23. 4월 현재 공시 내역
----, ----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예산(4월) / 결산(10월)	'21년 이후 업데이트 자료 없음.
--, --, ----, --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 소독관리 현황)	수시	'21년 이후 업데이트 자료 없음.
-----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 소독관리 현황)	수시	'13년 이후 업데이트 자료 없음.
---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미입력
---, ----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21년 이후 업데이트 자료 없음.
--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09년 이후 업데이트 자료 없음.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90일 이상 해외체류한 아동에게 과오지급된 양육수당 2,200천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1,878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8]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정수장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철원군 ■■■(전 ☆☆☆) 지방----- ●●●
② 철원군 △△△(전 ☆☆☆) 지방----- ▲▲▲
③ 철원군 ☆☆☆ 지방----- ■■■
④ 철원군 ☆☆☆ 지방----- ★★

내 용

철원군(☆☆☆)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정수시설 수질관리 및 인력운영 부적정

「수도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¹²⁾으로 정하는 수질검사의

1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

구분	검사주기	측정항목
정수장	매일검사 (6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매주검사 (7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매월검사 (53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붕소, 브롬산염, 우라늄(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적용),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동, 색도, 세제, 수소이온농도,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횟수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으로는 ① 「환경정책수도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 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을 갖춘 원수검사시설과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 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을 갖춘 정수검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매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도시설 운영인력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10.)」 II. 운영인력 산출기준 2. 산출기준 다. 연구사 등 수질연구(관리)인력에 따르면, 최근 유충 발생을 포함한 수질사고에 대한 예방, 원수수질관리, 시민들의 수돗물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수질연구소 등과 같은 조직과 별도로 수도시설 내 상주하여 지속적인 수질연구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을 검사 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수질검사 주기에 따라 매일, 매주, 매월, 분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1]과 같이 AA정수장 내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수질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수행 할 전문인력이 없어 [표 2]와 같이 매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분기검사 (7항목)	잔류염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포름알데히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필수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이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표 1] 철원군 갈말정수장 내 검사시설(실험실) 현황

구분	소재지	실험실 면적	실험장비 유무	비고
AA정수장	철원군 --로 000 AA정수장	23.1 m ²	○	시설 노후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철원군 정수장 수질검사 이행 현황

구분	측정항목	검사유무	시행자	비고
매일	6개	○	☆☆☆	
매주	7개	×	-	미이행
매월	53개	○	강원특별자치도 ■■■■	
매분기	7개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질검사 계획 미수립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수질검사의 개요,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 결과,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 빈도 및 검사방법,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이 포함된 수질검사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표 3]과 같이 2020년부터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철원군 수질검사계획 수립 현황

구분	계획 수립여부	비고
2020년	미수립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전 ☆☆☆) 지방----- ●●●는 2019. 0. 00.부터 2021. 0. 0.까지, 철원군(△△△, 전 ☆☆☆) 지방----- ▲▲▲은 2021. 0. 0.부터 2022. 00. 00까지, 철원군(☆☆☆) 지방-----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철원군(☆☆☆) 지방----- ★★는 2023. 0. 0.부터 0000까지 □□□ □로 근무하면서,

「수도법」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된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AA정수장에 수질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전문인력(수도시설 내 상주하여 지속적인 수질연구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주 시행하여야 할 정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수도법」에 따라 수질검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수장 내 수질검사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수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9]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운영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른 예산편성 업무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 포괄사업비 편성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규정된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96호 2019. 7. 1.)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1]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등 37개 부서에 51,394,720천 원의 시설비(401-01)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포괄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계	37개 부서		62개 사업	51,394,720
2023	- 등 11개 부서	401-01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16개 사업	10,892,512
2022	- 등 9개 부서	401-01	-----시설물 정비 등 14개 사업	14,390,432
2021	- 등 9개 부서	401-01	특정 -----정비 등 16개 사업	13,531,726
2020	- 등 8개 부서	401-01	-----유지보수사업 등 16개 사업	12,580,05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붙임1] 참조

2. 사고이월 처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사고이월요구서가 제출 된 경우 이월사유와 지출원인행위액을 확인하고 예산의 이월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2년 ‘----- 홍보 및 운영’의 사업예산 49,940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월액 19,800천 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로써 사고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사고이월을 하는 등, [표 2]와 같이 사고이월대상이 아닌 27개 사업 2,964,587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2] 사고이월사업 과다이월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계	17개 부서		27개 사업	2,964,587
2022	- 등 5개 부서	시설비 등 4개 과목	테마----- 홍보 및 운영 등 8개 사업	419,997
2021	- 등 7개 부서	시설비 등 4개 과목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1,976,488
2020	- 등 5개 부서	시설비 등 2개 과목	-----공원 보전 및 관리 등 8개 사업	568,102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붙임2] 참조

3. 예산전용 및 변경 소홀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사용 제한은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요건을 준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이라 함은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전용·변경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전용·변경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예산편성·집행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전용·변경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3]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심의 대상인 보조사업 또는 행사운영비 등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총 11건에 대한 예산 전용·변경을 그대로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3] 사전심의 미이행 사업 예산변경 현황

(단위: 천 원)

연월일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금액		사유	행정절차
		세부	통계목		감	증	사업부서	
22.9.29.	전용	직장동호회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000	15,000		제00회 ——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조성	201-03 행사운영비	35,000		15,000	-	
21.9.8.	전용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301-09 행사설비지원금	20,000	20,000		—— ——길 임시 개통에 따른 전용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 ——길 유지 보수	201-03 행사운영비	0		20,000	-	
20.6.30.	전용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6,000	3,500		제00주년 —— ——기념 학술회의 개최	보조금심의 미이행
		6.25전쟁 —— 행사	307-04 민간행사업보조	0		3,500	-	
22.4.25.	변경	——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9,000	15,00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관리	201-03 행사운영비	0		15,000	-	
22.5.23.	변경	철원한탄강 ——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370,000	50,000		철원DMZ ——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연월일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금액		사유	행정절차
		세부	통계목		감	증	사업부서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0		50,000	-	
22.7.22.	변경	철원 역사공원 -----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90,419	14,000		철원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 운영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철원 역사공원 ----- 운영 및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0		14,000	-	
21.3.3.	변경	신군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67,500	10,000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숙박비 지원	보조금심의 미이행
		신군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00	-	
21.8.26.	변경	6.25전쟁-----행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	8,000		6.25 선양사업 추진	보조금심의 미이행
		호국보훈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8,000	-	
21.8.26.	변경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00	1,000		6.25 선양사업 추진	보조금심의 미이행
		호국보훈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8,000		1,000	-	
21.11.3.	변경	단위사업 운영경비 (기획)	202-01 국내여비	9,280	5,500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변경 사용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국정 시책 및 현안추진	201-03 행사운영비	7,000		5,500	-	
21.11.12.	변경	군정시책 재정지원	201-02 공공운영비	30,000	15,000		사업부서 행사운영비 지원	행사성사전심의 미이행
		군정시책 재정지원	201-03 행사운영비	0		15,000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예산편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예산편성, 예산전용·변경 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포괄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회계년도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2020	8개 부서		16개 사업	12,580,050
2020	-	401-01	-- 유지보수사업(비포장 L=00km)	300,000
2020	-	401-01	---시설물 정비사업(L=000km)	300,000
2020	-	401-01	---- 유지보수사업(재포장)	500,000
2020	-	401-01	-----도색사업(-- 및---도로 L=000km)	450,000
2020	-	401-01	-- 기성제 정비사업	150,000
2020	-	401-01	---- 개보수사업(00개소, L=00.0km)	3,000,000
2020	-	401-01	---- 및 -- 보수사업	500,000
2020	-	401-01	----경작로 확포장사업	2,300,000
2020	-	401-01	----보수사업	1,500,000
2020	-	401-01	가뭄대책 -----개발사업(-----관정00공)	350,000
2020	-	401-01	-----리 -----포장 외 10건	458,500
2020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6,150
2020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00개리)	679,350
2020	-	401-01	-----리000-0 -----포장사업 외 00개소	860,225
2020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9,000
2020	-	401-0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설치 등)	356,825
2021	9개 부서		16개 사업	13,531,726
2021	-	401-01	특정-----정비	150,000
2021	-	401-01	---- 유지보수사업(비포장 L=00km)	200,000
2021	-	401-01	----시설물 정비사업(L=000km)	300,000
2021	-	401-01	도로-----사업(-- 및---도로 L=000km)	450,000
2021	-	401-01	마을안길 토지보상	200,000
2021	-	401-01	---- 개보수사업	4,120,006
2021	-	401-01	--- 및 -- 보수사업	500,000
2021	-	401-01	----경작로 확포장사업	2,300,000
2021	-	401-01	----보수사업	1,500,000
2021	-	401-01	가뭄대책 -----개발사업(-----관정00공)	350,000
2021	-	401-01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514,070
2021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8,480
2021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00개리)	711,890
2021	-	401-01	-----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외 00개소	814,100

회계년도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2021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5,410
2021	-	401-0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설치 등)	417,770
2022	9개 부서		14개 사업	14,390,432
2022	-	401-01	특정----정비	125,472
2022	-	401-01	-----유지보수사업(비포장 L=00.0km)	750,000
2022	-	401-01	-----시설물 정비사업(L=000km)	300,000
2022	-	401-01	도로-----사업(-- 및---도로 L=000km)	500,000
2022	-	401-01	--시설 개보수사업	4,650,000
2022	-	401-01	-----구역내 노후 ----- 시설 개량사업	1,150,000
2022	-	401-01	-----경작로 확포장사업	1,800,000
2022	-	401-01	--포장 및 보수사업	2,000,000
2022	-	401-01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460,110
2022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8,930
2022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00개리)	656,700
2022	-	401-01	-----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외 00개소	753,870
2022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9,110
2022	-	401-0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설치 등)	366,240
2023	11개 부서		16개 사업	10,892,512
2023	-	401-01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698,000
2023	-	401-01	하천 ----- 정비사업(자체)	200,000
2023	-	401-01	소규모(동네) -----시설 조성 및 관리	400,000
2023	-	401-01	지역개발사업 ----- 토지보상	200,000
2023	-	401-01	미정비된 ----- 신설	2,300,000
2023	-	401-01	노후 ----- 교체	1,000,000
2023	-	401-01	-----관정 개발사업(예비비)	150,000
2023	-	401-01	-----시범지구 시설정비	600,000
2023	-	401-01	----- 보수 포장	1,000,000
2023	-	401-01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152
2023	-	401-01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608,480
2023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35,640
2023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00개리)	871,040
2023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88,080
2023	-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5,720
2023	-	401-0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설치 등)	485,400

[붙임2] 사고이월사업 과다이월 현황

(단위: 천 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이월가능액 (E=B-C)	과다이월액 (F=D-E)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2022년(8건)			8,702,504	8,234,187	5,167,738	3,486,446	3,066,449	419,997
-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연구용역비	49,940	25,740	25,740	19,800	0	19,800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33,214	0	0	119,287	0	119,287
-	소규모-----체육시 설조성 및 관리	시설비	580,000	571,022	483,190	93,328	87,831	5,497
-	----- 국민관광지 연결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4,284,375	4,244,308	1,981,150	2,303,225	2,263,158	40,067
-	군도0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2,528,970	2,364,159	1,729,395	799,575	634,765	164,811
-	평화----- 조성사업	시설비	592,837	582,165	501,470	86,025	80,695	5,330
-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재료비	450,660	387,208	387,208	46,149	0	46,149
-	의정활동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2,508	59,585	59,585	19,056	0	19,056
2021(11건)			17,333,662	13,443,418	9,944,886	5,475,019	3,498,531	1,976,488
-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819,441	1,687	1,687	45,129	0	45,129
-	-----공원 보전 및 관리	시설비	406,695	344,497	324,937	76,573	19,560	57,013
-	-----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99,000	68,090	68,090	13,200	0	13,200
-	소하천 정비	시설비	1,131,629	995,632	455,268	676,361	540,364	135,997
-	-----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926,440	3,542,056	1,521,847	2,404,593	2,020,209	384,384
-	공공-----건립지원	시설비	2,079,520	1,983,778	1,983,778	64,950	0	64,950
-	동송000호선-----개설 및 중앙----- 개선사업	시설비	1,097,000	1,089,069	882,670	214,330	206,399	7,931
-	군도0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1,053,500	55,026	19,530	1,033,970	35,496	998,474
-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320,000	163,669	163,669	156,331	0	156,331
-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5,188,438	4,997,409	4,382,998	719,581	614,411	105,170
-	조직----- 설치	자산및물품 취득비	212,000	202,506	140,413	70,000	62,093	7,907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이월가능액 (E=B-C)	과다이월액 (F=D-E)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2020년(8건)			5,561,878	4,879,853	3,097,046	2,350,909	1,782,807	568,102
-	DMZ-----&----- ----- 여행길 ----- 조성	시설비	180,400	179,735	112,400	68,000	67,335	665
-	-----공원 보전 및 관리	시설비	452,313	448,933	146,813	305,500	302,120	3,380
-	----- 문화 복원 사업	연구용역비	85,000	0	0	85,000	0	85,000
-	----- 협력사업	시설비	1,294,482	1,219,761	864,603	409,098	355,158	53,940
-	-----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998,884	1,849,588	1,092,616	906,268	756,972	149,296
-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43,975	284,545	81,191	420,989	203,355	217,634
-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600,000	504,951	407,083	141,796	97,868	43,928
-	소규모 -----시설 관리	시설비	406,825	392,340	392,340	14,259	0	14,259

[일련번호: 10]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 업무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¹³⁾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르면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13)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고 매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대부 재산의 이용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표]와 같이 -----리 000-00 등 13건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상가 등 기타 용도로 사용 중임에도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341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다.

그로 인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부료 38,682천 원에 비하여 19,341천 원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철원군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공유재산 대부료 과소 부과 현황

(단위: m², 원)

연번	대부 공유재산(토지) 현황			대부료(20년~23년) 부과 내역			
	소재지	면적 (대부면적)	대부목적 (이용현황)	대부년도	대부료 부과(A)	정상 대부료(B)	대부료 차액 (C=B-A)
합계	4필지, 13건			2020~2023	19,340,870	38,681,740	19,340,870
1	-----리 000-00	00	주거용 (기타용_상가)	2020	935,640	1,871,280	935,640
2	"	"	"	2021	945,720	1,891,440	945,720
3	"	"	"	2022	971,880	1,943,760	971,880
4	"	"	"	2023	1,030,840	2,061,680	1,030,840

연번	대부 공유재산(토지) 현황			대부료(20년~23년) 부과 내역			
	소재지	면적 (대부면적)	대부목적 (이용현황)	대부년도	대부료 부과(A)	정상 대부료(B)	대부료 차액 (C=B-A)
5	-----리 000-00	00	주거용 (기타용_상가)	2020	1,214,250	2,428,500	1,214,250
6	"	"	"	2021	1,221,370	2,442,740	1,221,370
7	"	"	"	2022	1,257,750	2,515,500	1,257,750
8	"	"	"	2023	1,326,970	2,653,940	1,326,970
9	-----리 000-00	00	주거용 (기타용_상가)	2020	2,428,500	4,857,000	2,428,500
10	"	"	"	2021	2,443,500	4,887,000	2,443,500
11	"	"	"	2022	2,560,500	5,121,000	2,560,500
12	"	"	"	2023	2,683,500	5,367,000	2,683,500
13	-----리 0000-0	000	주거용 (기타용_주차장)	2020	320,450	640,900	320,45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① 주거용 목적 외로 사용 중인 대부재산을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과소 부과한 대부료 19,341천 원을 추징하고,

② 사용목적과 다르게 대부계약이 체결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현황에 맞게 대부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부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¹⁴⁾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1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렬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렬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에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르면 영 별표9의 제7호 (현, 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¹⁵⁾와 같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규정에서 정한 수당 외에는 상호간에 이를 함께 지급하면 안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와 같이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할 수 없는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을 병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 ----0급 EEE 등 10명에 대하여 총 2,316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특수업무수당 병급 지급 현황

(단위: 원)

구분	성명	수당	지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합계	10명			2,316,000	
1	AAA	기술정보수당	120,000	120,000	특수업무수당 병급 불가
		장려수당	1,440,000		
2	BBB	기술정보수당	20,000	40,000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20,000		
		장려수당	240,000		
3	CCC	기술정보수당	73,000	146,000	특수업무수당 병급 불가
		기술정보수당가산금	73,000		
		장려수당	584,000		

15)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분뇨·하수·폐수·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현장종사자 포함)	월 240,000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70,000원

구분	성명	수당	지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4	DDD	기술정보수당	250,000	400,000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150,000		
		장려수당	1,277,410		
5	EEE	기술정보수당	300,000	750,000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450,000		
		장려수당	3,600,000		
6	FFF	기술정보수당	180,000	180,000	"
		장려수당	2,160,000		
7	GGG	기술정보수당	20,000	20,000	"
		장려수당	240,000		
8	HHH	기술정보수당	90,000	150,000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60,000		
		장려수당	720,000		
9	III	기술정보수당	270,000	450,000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180,000		
		장려수당	2,160,000		
10	JJJ	기술정보수당	60,000	60,000	"
		장려수당	720,00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과다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2,316천 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소속 직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세 부과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지방세 16건 총 101,498천 원을 부과누락하였다.

[표 1]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세 부과누락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미(과소)부과액	과세대상	비 고
합계		16	101,498		
취득세 계		6	75,696		
	취득세	6	70,428	▣ 지목변경 취득 미신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건수에 포함
	농어촌특별세	-	5,268	▣ 취득세 부과 누락분	
재산세 계		10	25,802		
	재산세	10	21,502	▣ 구분과세 및 상한세액 적용 부적정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건수에 포함
	지방교육세	-	4,300	▣ 재산세 부과 누락분	

※ 철원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1. 태양광 발전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

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전·답·임야 등에서 대지·잡종지로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목변경일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¹⁶⁾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2]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 총 75,696천 원을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세 부과누락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납세자	과세물건	취득일	미신고 지방세 내역			비고 (포함)
				소계	취득세	농특세	
합계	6개 법인	10건		75,696	70,428	5,268	
1	-	----리 000번지 와 0필지	2021. 3.00.	5,752	5,363	389	가산세
2	-	----리 000번지	2021. 3.00.	34	32	2	"

16)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10만분의 22

구분	납세자	과세물건	취득일	미신고 지방세 내역			비고 (포함)
				소계	취득세	농특세	
3	-	----리 000번지	2021. 6.00.	1,080	1,007	73	"
4	-	----리 000번지 외 0필지	2022.11. 0.	1,349	1,247	102	가산세
5	-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1. 3.00.	14,021	13,073	948	"
6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1. 6.00.	8,692	8,096	596	"
7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2.11. 0.	6,678	6,175	503	"
8	-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1. 3.00.	17,970	16,755	1,215	"
9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1. 6.00.	11,119	10,357	762	"
10		—리 산000-00번지 외 0필지	2022.11. 0.	9,001	8,323	678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2. 태양광 발전시설 재산세 상한 적용 부적정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정하면서, 단서로 해당연도의 과세 대상별 토지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현황 등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에는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직전연도 과세자료와

현년도 과세자료(사용현황, 소유자 등)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상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3]과 같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임야→잡종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나, 세부담 상한 대상으로 착오 적용하여 총 22,639천 원의 재산세를 과소부과(정당부과액에서 기부과액을 제한 금액) 하였다.

[표 3] 재산세 세부담상한 착오적용 과소부과 현황

(단위: 천 원)

부과년도	납세자	과세물건	기부과액 (a)	정당부과액 (b)	과소부과액 (c=b-a)	비고
합계			7,696	30,335	22,639	
2022	-	-----리 산 000-00 외 00건	4,616	15,767	11,151	지방교육세 포함
2021	"	"	3,080	14,568	11,488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3. 태양광 발전시설 재산세 구분과세 부적정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바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에너지·자원의 공급 등의 토지로서 대통령령¹⁷⁾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저율: 1천분의 0.7)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고율: 1천분의 2 ~ 1천분의 5)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을 통한 전기의 생산·공급에 제공되는 토지는 국민생활안정,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로서의

1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로 보아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분(종합·분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4]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원개발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착오 적용하여 총 3,163천 원의 재산세를 과소부과(정당부과액에서 기부과액을 제한 금액) 하였다.

[표 4]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착오적용 과소부과 현황

(단위: 천 원)

부과년도	납세자	과세물건	기부과액 (a)	정당부과액 (b)	과소부과액 (c=b-a)	비고
계			1,029	4,192	3,163	
2022	- 외 0개	-----리 000 외 00건	455	1,959	1,504	지방교육세 포함
2021	"	"	352	1,769	1,417	
2020	000 외 0개	-----리 000외 1건	98	194	96	
2019	"	"	124	270	146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누락 16건 총 101,498천 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누락 되는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세 부과누락 현황

1.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연번	납세자	과세물건	지목변경일	합계	취득세	농특세
계	6개법인	10건		75,696,170	70,428,310	5,267,860
1	-	----읍 ----리 000 외 0필지 13,781㎡	2021.3.00.	5,752,920	5,364,110	388,810
2	-	----읍 ----리 000 69㎡	2021.3.00.	34,690	32,350	2,340
3	-	----읍 ----리 000 2,178㎡	2021.6.00.	1,080,600	1,006,550	74,050
4	-	----읍 ----리 000 외 0필지 3,347㎡	2022.11.0.	1,348,080	1,246,500	101,580
5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19,000㎡	2021.3.00.	14,020,550	13,072,970	947,580
6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11,957㎡	2021.6.00.	8,691,030	8,095,460	595,570
7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10,754㎡	2022.11.0.	6,677,880	6,174,690	503,190
8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24,412㎡	2021.3.00.	17,970,210	16,755,690	1,214,520
9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15,334㎡	2021.6.00.	11,118,990	10,357,030	761,960
10	-	----읍 ----리 산000-00 외 0필지 14,496㎡	2022.11.0.	9,001,220	8,322,960	678,260

2. 재산세 세부담상한 착오적용 과소부과

(단위: 원)

연번	납세자	부과년도	기부과액 (a)	정당부과액 (b)	과소부과액(재산세+지방교육세)		
					소계(b-a)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7,696,180	30,334,550	22,638,370	18,865,310	3,773,060
1	-	2022	4,615,920	15,766,640	11,150,720	9,292,270	1,858,450
2	-	2021	3,080,260	14,567,910	11,487,650	9,573,040	1,914,610

3. 재산세 구분과세 착오적용 과소부과

(단위: 원)

연번	납세자	부과년도	기부과액(a)	정당부과액(b)	과소부과액(재산세+지방교육세)		
					소계(b-a)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028,640	4,192,070	3,163,430	2,636,200	537,230
1	-	2022	0	7,390	7,390	6,160	1,230
2	-	2021	0	6,960	6,960	5,800	1,160
3	-	2022	0	7,150	7,150	5,960	1,190
4	-	2021	0	6,860	6,860	5,720	1,140
5	-	2022	0	3,580	3,580	2,990	590
6	-	2021	0	3,380	3,380	2,820	560
7	-	2022	34,570	113,420	78,850	65,710	13,140
8	-	2021	23,040	106,830	83,790	69,830	13,960
9	-	2022	0	7,080	7,080	5,900	1,180
10	-	2021	0	6,660	6,660	5,550	1,110
11	-	2022	33,780	101,350	67,570	56,310	11,260
12	-	2021	28,260	95,490	67,230	56,030	11,200
13	-	2022	214,880	1,373,170	1,158,290	965,240	193,050
14	-	2021	159,510	1,276,800	1,117,290	931,070	186,220
15	-	2022	114,130	158,300	44,170	36,810	7,360
16	-	2021	95,770	132,940	37,170	30,980	6,190
17	-	2020	87,720	164,910	77,190	64,320	12,870
18	-	2019	86,050	161,630	75,580	62,980	12,600
19	-	2022	57,760	187,620	129,860	108,210	21,650
20	-	2021	44,980	132,820	87,840	73,200	14,640
21	-	2020	10,120	28,940	18,820	15,680	3,140
22	-	2019	38,070	108,790	70,720	58,930	11,790

[일련번호: 13]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철원군 □□□ 지방-----



내 용

철원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디지털 뉴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철원군 디지털 행정 구현 및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철원군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부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1,672	
행정정보화 사업	시설장비보강,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산교육훈련강화, 공공빅데이터활용	1,273	
지역정보화 사업	주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육성,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399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¹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¹⁹⁾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및 계약을 발주할 경우 과업내용,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과업내용 변경 요청시 이에 따른 심의·의결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0. 6.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으로 2020. 12. 10.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9)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

2. “지식정보부서”란 철원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채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2021. 12. 15. 강원특별자치도(■■■■과)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협조 요청²⁰⁾에도 약 4개월이 지난 2022. 4. 19.에 이르러서야 [표 2]와 같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더욱이 2020. 6. 9.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과)로부터 2020. 12.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변경사항 안내²¹⁾ 및 2020. 12. 14.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적용 권고²²⁾ 등이 있었음에도 □□□는 개정 법률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철원군 정보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또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철원군(□□□)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원 남성 위원을 위촉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위촉하는 등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구성 계획수립	제1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男, 5명)					임기
		당연직	위촉직				
2022. 4. 19.	2022. 4. 00.(서면회의)	- (000)	- (000)	- (000)	- (000)	- (000)	2년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0) 강원특별자치도 ■■■과-00000(2021.12.00.)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협조 요청

21) 강원특별자치도 ■■■과-00000(2020.12.0.)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변경사항 안내 송부

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5034(2020.12.14.)호 소프트웨어사업 관한 법령적용 권고

그 결과 [표 3]과 같이 2020. 12.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이후 2022. 4. 19.까지 사업부서(@@@ 등 14개 부서)에서 발주한 ‘철원군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총 71건, 2,600백만 원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발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철원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미심의 내역

(단위: 천 원)

발주부서	계 약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과업심의위원회
합계 : 총 71개 사업			2,600,341	
-	철원군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 등 (12개 사업)	2021~2022	330,631	미이행
-	강원생태평화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등 (4개 사업)	2021~2022	46,523	미이행
-	2021년도 영상의학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	5,940	미이행
-	2022년 -----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15개 사업)	2021~2022	921,312	미이행
-	2022년 철원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4개 사업)	2021~2022	53,346	미이행
-	2021년 철원군 ----- 통합유지보수 용역 등 (16개 사업)	2021~2022	725,824	미이행
-	2022년 DMZ관광 ----- 장비 유지보수용역 등 (2개 사업)	2021~2022	12,127	미이행
-	2021년 --뱅크(가상계좌납부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2개 사업)	2021~2022	15,120	미이행
-	2022년 ----- 유지관리용역 등 (3개 사업)	2021~2022	26,690	미이행
-	2021년 철원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3개 사업)	2021	44,422	미이행
-	2022년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 유지보수 용역 등(3개 사업)	2021~2022	40,968	미이행
-	철원관광 ----- 다국어 제작사업 시행	2021	19,800	미이행
-	2021년 철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21	7,460	미이행
-	2022년도 -----체계(-----) DB현행화 용역 등 (5개 사업)	2021~2022	350,178	미이행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세부 내역 불임)

철원군(□□□) 지방----- ●●●●은 2022. 0. 0.부터 2023. 0. 00. 0000 까지 □□□□로 소프트웨어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2. 00. 강원특별자치도(■ ■ ■ 과)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협조 요청에도 약 4개월이 경과한 2022. 4. 00.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성별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뒤늦게 구성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성별 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원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미심의 내역

(단위: 원)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발주부서
	합계		2,600,343,310	
1	2021년 -----통합체계 기반시스템 유지보수	2020-12-29	19,697,000	-
2	2021년도-----시스템(-----) 유지보수	2020-12-29	19,130,000	-
3	2022년 -----통합체계 기반시스템 유지보수	2021-12-29	19,697,000	-
4	-----시스템(-----) 유지보수	2021-12-29	14,674,000	-
5	철원군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	2022-04-25	176,400,000	-
6	2021년 -----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14	4,453,200	-
7	2021년도 물품관리 -----(-)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16,200,000	-
8	2022년도 -----(-)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시행	2021-12-27	16,200,000	-
9	2022년도 -----(-)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시행	2021-12-27	16,200,000	-
10	2022년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13,198,000	-
11	2021년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2020-12-14	13,198,000	-
12	2021년도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1,584,000	-
13	2021년도 ----- 설치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	2020-12-29	18,491,400	-
14	2022년 ----- 설치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	2022-01-28	19,262,000	-
15	강원생태평화 통합 ----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2021-06-04	8,770,000	-
16	2021년도 영상의학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5,940,000	-
17	2021년 ----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2020-12-15	9,987,300	-
18	2021년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21	95,550,030	-
19	2021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21	112,350,600	-
20	2021년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2020-12-21	45,900,000	-
21	2021년 -----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2021-01-13	159,363,230	-
22	2021년도 -----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 용역	2021-02-08	8,793,510	-
23	2022년도 ----- 홈페이지 콘텐츠 통합운영관리 용역	2022-02-22	8,623,890	-
24	2022년 -----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2021-12-22	46,500,000	-
25	2022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21-12-27	80,152,000	-
26	2022년 철원군 ----- 유지보수	2021-12-29	19,500,000	-
27	2022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12-31	123,082,200	-
28	2022년 ---- 시설장비 유지보수	2021-12-31	12,343,000	-
29	2022년 ----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2022-02-11	165,000,000	-
30	2021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15	16,174,800	-
31	2022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12-31	17,992,000	-
32	2021년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2021-01-29	7,733,000	-
33	2022년도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2021-12-29	7,992,000	-
34	2021년 철원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0-12-21	17,964,000	-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발주부서
35	2022년 철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19,657,000	-
36	2021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8,748,000	-
37	2021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5,799,600	-
38	2021년 -----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0-12-29	14,865,200	-
39	2021년 -----CCTV 유지보수 용역	2020-12-29	11,664,000	-
40	2021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2021-04-30	19,187,000	-
41	2022년 -----CCTV 유지보수 용역	2021-12-28	12,528,000	-
42	2022년 -----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14,805,000	-
43	2022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8,928,000	-
44	2022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8,874,000	-
45	2022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13,428,000	-
46	2021년 철원군 -----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2020-12-21	236,039,540	-
47	2022년 철원군 CCTV -----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2021-12-31	241,692,940	-
48	2021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0-12-29	44,936,490	-
49	2022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1-12-31	45,143,980	-
50	2021년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2020-12-29	19,743,300	-
51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2021-12-31	19,441,000	-
52	2021년 DMZ관광 -----프로그램 장비 유지보수용역 시행	2020-12-29	6,297,000	-
53	2022년 DMZ관광 -----프로그램 장비 유지보수용역	2022-03-02	5,830,000	-
54	2021년 --뱅킹(가상계좌납부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2020-12-14	7,290,000	-
55	2022년 --뱅킹(가상계좌납부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2021-12-31	7,830,000	-
56	2021년 -----유지관리 용역(-)	2020-12-15	11,468,000	-
57	2021년 -----유지관리 용역(-)	2020-12-15	3,760,000	-
58	2022년 -----유지관리용역	2021-12-31	11,462,000	-
59	2021년 철원 -----장비 유지보수 용역	2020-12-15	17,998,200	-
60	2021년 철원 -----운영시스템 관리 용역	2020-12-30	6,624,000	-
61	철원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	2020-12-30	19,800,000	-
62	2021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01-05	14,688,000	-
63	2022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2022-03-28	15,480,000	-
64	2022년 철원 농특산물 -----유지보수 용역	2022-03-15	10,800,000	-
65	철원관광 -----다국어 제작사업 시행	2021-06-03	19,800,000	-
66	2021년 철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20-12-22	7,460,700	-
67	2021년도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2020-12-28	19,080,000	-
68	2021년도 -----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	2020-12-28	19,350,000	-
69	-----평가 및 -----취약성 분석 용역	2021-04-30	272,598,200	-
70	2022년도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2021-12-29	19,800,000	-
71	2022년도 -----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	2021-12-29	19,350,000	-

[일련번호: 14]

강원특별자치도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기간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

징계대상자 ① 철원군 @@@

지방-----



② 철원군 @@@

지방-----



※ 훈계대상자 철원군 ▨▨▨(전 □□□)

지방-----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철원군(▨▨▨)은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및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간정보, 행정정보, 영상정보 등의 공유를 통한 군정업무 협업화를 위하여 [표 1]와 같이 ‘철원군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철원군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위: 천 원)

계약명	계약금액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76,400	'22. 4. 1.	'22. 4. 00. ~'22.11.00.	AAAA	협상에 의한 계약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²³⁾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²⁴⁾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²⁵⁾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²⁶⁾ 및 서약서²⁷⁾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위원회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적정 사업기간 산정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후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은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공고일(2022. 4. 1.) 전까지 정보화 업무 총괄 부서인 에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적정 사업기간에 대한 심의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표 2]와 같이 적법한 위촉 절차²⁸⁾ 없이 임의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23)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24) 붙임 1 참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별표 1)」

25) 붙임 2 참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별지 제3호서식)」

26) 붙임 3 참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서)」

27) 붙임 4 참조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28) 위원회 구성 계획 미수립 및 철원군수 위촉 절차 미이행 / 2022. 3. 00. 서면회의 수당 미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원 5명중 2명은(000, 000)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자격²⁹⁾없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위원으로 인정하고 심의절차를 추진하였다.

[표 2] 위촉 절차 없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5명)					임기
2022. 3. 16. (서면 심의)	- (000)	- (000)	- (000)	- (000)	- (000)	없음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표 2]은 서면심의를 위하여 사업기간 산정서 서식을 위원에게 배포하면서 [표 3]과 같이 위원별 검토 의견 및 추정 사업기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사전에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며, 종합의견 역시 5명의 위원이 동일한 의견으로 작성하게 안내하는 등 적정 사업기간에 대한 심의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30)은 철원군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 □□□□□□으로서 민원허가실에서 추진한 적법한 위촉 절차 없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등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표 2]에서 추진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기간 산정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서명하는 등 철원군 소프트웨어사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29)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30) 현 [표 2]

[표 3]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내역

검토항목	위원명	검토 의견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000 000 000 000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② 사업기초자료			
③ 유사사업 자료			
④ 기타 특이사항			
⑤ 종합의견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 사전에 인쇄하여 동일한 검토 의견으로 작성	
		* 동일한 검토의견 으로 작성 안내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위원별 산정서 붙임 5 참조 / 위원별 서약서 붙임 6 참조)

더욱이 []은 심의위원 5명중 3명(000, 000, 000)을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업체 AAAA³¹⁾로 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고, 사업기간 산정서 작성 의뢰 절차는 철원군([])이 직접하여야 함에도 AAAA 직원이 3명의 000에게 관련사업 안내를 하고,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에 서명을 받아 [] □□□ □(▲▲▲)에게 제출하는 등 계약 발주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련업체가 부적정하게 관여하게 하였다.

그 결과 관련 업체의 위원 추천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물임에도 철원군([])은 2022. 4. 1. ‘철원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³²⁾’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여 공고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업무 추진을 저해하였다.

철원군 @@@(전 []) 지방----- ●●●는 2021. 0. 0.부터 2023. 0. 00. 0000까지 □□□□로, 철원군 @@@(전 []) 지방----- ▲▲▲은 2020. 0. 00.부터 2023. 0. 00. 0000까지 □□□□로 각각 근무하면서, 자격없는 위원을 관련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적법한 위촉 절차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위원 5명 모두 같은 의견으로 사업기간 산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결과를 입찰공고문에 게재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철원군 [](전 □□□) 지방----- ■■■은 철원군 □□□□으로서 부적정하고 자격없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법한 철원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했어야하나, 발주부서인 []에서 추진하는 부적정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기간 산

31) 본 사업의 최종 낙찰업체(계약상대자)

32) 철원군 공고 제2022-509호

정서에 충분한 검토없이 서명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이상 ~ 2,000미만	22
	2,000이상 ~ 3,000미만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한다.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과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과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_____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원장 _____(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서 약 서

본인은 0000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00000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00000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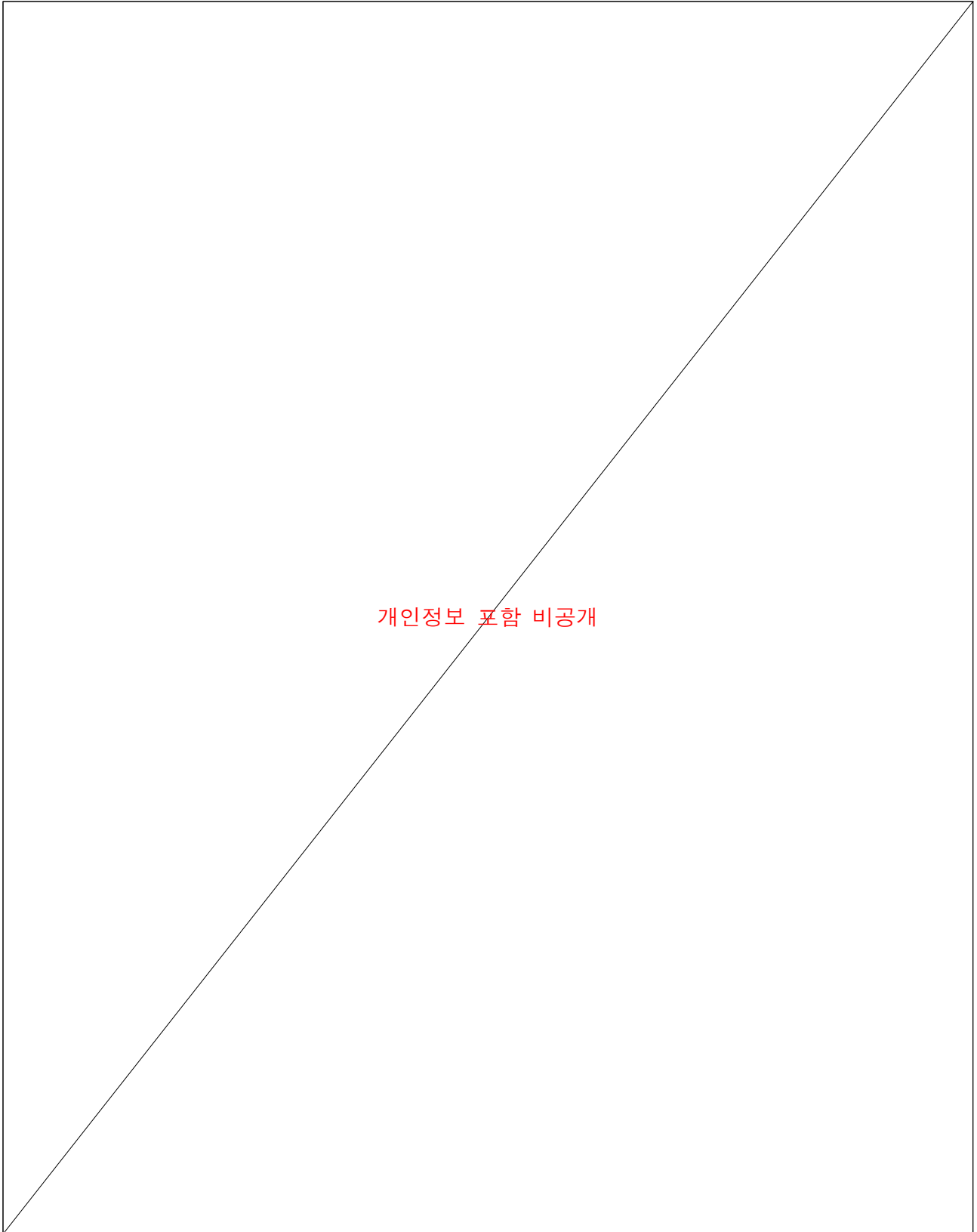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00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붙임 7] 위원별 서약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위원별 서약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위원별 서약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위원별 서약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위원별 서약서(00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등 3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2021. 2. 18.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에서는 도내 시·군 계약부서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등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안내(회계과-5792호)”를 통해 업무 처리 시 업체 제출서류 및 현장 방문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받고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 @ @, ㉡㉡㉡)는 [표 1]과 같이 10건의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직접생산증명서에 없는 물품구입 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관서	계약일	계약명	계약 상대자	계약물품	직생증명 보유	미생산 물품 금액	출장 복명
				미생산물품			
	합계	총 10건				172,825	
-	2020.03.00.	----- 조성사업 (사인및조형물제작)	000	조형물, 간판	○	33,600	×
				망원경 7대	X		
-	2021.07.00.	2021년 ----- 제작 설치사업	000	이동식부스	○	495	×
				냉온풍기 1	X		
-	2021.08.00.	----- 제작설치	000	조형물	○	38,411	×
				영상관련시스템 1식	X		
-	2022.02.00.	2022년 홍보마케팅 ----- 제작 및 설치	000	전광판	○	39,506	×
				음향장비 시스템 1식	X		
-	2022.07.00.	철원 ----- 건립사업(전기) -----	000	빌딩자동제어시스템	○	11,685	×
				산업용컴퓨터 1식	X		
-	2022.09.00.	철원군 ----- 교체 제작 설치	000	전광판	○	1,600	×
				오디오앰프 1식	X		
-	2022.11.00.	----- 컨테이너 설치사업 ----- 및 -----	000	컨테이너하우스	○	1,400	×
				에어컨 2대	X		
-	2022.12.00.	2020년 ----- (전기및계측제어) ----- 사업 계장제어장치	000	계장제어장치	○	25,748	×
				산업용컴퓨터 1식 무정전전원장치1대	X		
-	2023.02.00.	----- 재해복구사업 ----- 시설(전기)_계장제어장치,배전반,분전반	000	계장제어장치	○	11,530	×
				산업용컴퓨터 1식	X		

관서	계약일	계약명	계약 상대자	계약물품	직생증명 보유	미생산 물품 금액	출장 복명
				미생산물품			
				무정전전원장치1대			
-	2023.02.00.	----- 건물자동제어시스템 제작설치	000	빌딩자동제어시스템	○	8,850	×
				산업용컴퓨터 1식 무정전전원장치1대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이행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계약상대자를 소속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배제 기간 중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철원군(@ @ @)는 [표 2]와 같이 ‘AAAA’ 등 2건의 계약상대자에게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소속 기관에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수의계약 배제대상 미통보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준공일 (검사일)	지연배상금 부과		수의계약 배제통보 (배제기간)	배제기간 계약체결
					일수	부과액(A)		
합 계						2,450,800		
2019년 공공체육시설 ----- 교체사업(-----공원)	100,102	BBBB	'19.10.28.~ '20.1.31.	'20. 2.19. ('20. 2.19.)	15	98,760	미이행	없음
2020~2030 철원군 ----- 용역	43,605	AAAA	'19. 7.11.~ '20. 4.25.	'20. 6.29. ('20. 6.29.)	84	2,352,040	미이행	없음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계약심의위원회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해당 시·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인 경우 10억 원 이상)을 말하고,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과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입찰 및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 ☆☆☆)은 [표 3]와 같이 9건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을 사유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는 대규모 계약 사항의 적법성과 적절성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이므로 계약담당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내역

(단위: 천 원)

계약 년도	종류	계약명	추정가격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부서
합계		9건	24,138,762				
2022	물품	-- --- 테마파크조성사업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1,400,000	제한경쟁	2022. 3.10.	미심의	-
2022	용역	철원 -----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107,399	수의1인견적	2022. 3. 2.	"	-
2021	물품	-----공원 시설(다목적 --)확충사업 관급자재(막구조)	1,349,414	제한경쟁	2021. 4.21.	"	-
2021	용역	-- --- 및 철원 --공원 조성사업(건축)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1,050,000	수의1인견적	2021. 3.18.	"	-
2020	물품	--(--0, 0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도처리공법사 기자재	1,000,000	수의1인견적	2020.12.23.	"	-
2020	용역	--하수처리구역(--,--0,--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533,415	일반경쟁	2020.10.12.	"	-
2020	공사	--하수처리구역(--,--0,--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547,722	제한경쟁	2020.11.18.	"	-
2021	공사	--(--0, 0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목,건축,기계)	6,055,532	제한경쟁	2021. 1. 5.	"	-
2022	용역	-----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95,280	일반경쟁	2021.12.28.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선금의 채권확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³³⁾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33)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함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³⁴⁾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사업 중지 기간 중 선금에 대한 증권·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만기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 잔액 및 이자상당액의 재정 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지 중인 사업의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증권·보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4]와 같이 중지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선금보증서 관리 현황

(단위: 천 원)

연 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중지일)	선금 지급액	선금보증서 현황	
						보증액	보증기간
합계	2건		245,591		110,144	112,163	
1	철원군 ----- 및 ---도로 기본 정비계획수립 ----- 용역	-	57,191	'22. 2.00.~'22. 5.00. ('22. 5. 18.)	40,033	40,993	'22. 6.21.~'23. 2.21.
2	철원----- 시설개선사업	-	188,400	'22. 9.00.~'22.12.00. ('22.12.20.)	70,111	71,170	'22.11. 1.~'23. 2.24.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4)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선금 보증기간이 경과한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생산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정하여 추진하시고,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시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사업이 중지 또는 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선금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등 11개 부서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이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의 증감, 공정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공 전에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확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 등 9개 발주부서)은 [표]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정원) 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즉시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선 시공한 뒤 준공일 또는 준공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사후에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표] 先시공 後변경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변경계약과 준공일	발주부서
			증액	사유		
	합계: 27건	8,980,143	901,358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178,418	8,019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준공일전 5일 이내 설계변경	-
2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0세천 0공구) 응급복구공사 등 6개사업	1,404,022	213,086	"	"	-
3	--어린이공원(버스킹공연장)조성사업	478,671	54,461	"	"	-
4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74,191	46,472	"	"	-
5	2021년 --저수지 재난안전 사각지대 개선사업 시행 등 2개사업	230,254	18,846	"	"	-
6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2개 사업	756,243	67,843	"	"	-
7	2022 --산 무장대 보행로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2,036,873	209,318	"	"	-
8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건축) 등 2개 사업	1,572,386	107,947	"	"	-
9	도시재생 뉴딜사업(--정원) 조성 등 7개 사업	2,249,085	175,366	"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불임 참조

철원군(@@@, 🏢🏢🏢)은 설계변경 사항이 실제 준공 기한 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한 공정으로 선 시공되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고 발주부서의 공사계약 변경 시행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여건이 변동되면 설계변경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한 뒤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시공 후변경 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최초 계약일	계약명	계약상 대자	최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준공일	발주부서
				변경 계약일	증액	사유		
합계	27건		8,980,143		901,358			
2021042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	178,418	20210729	8,019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731	-
20210106	2021년 소하천(----천) 재해복 구 사업	-	244,703	20210525	11,975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528	-
20210326	2021년 소하천(-----천, ----- 천) 재해복구사업	-	131,387	20211104	6,921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1106	-
20210412	2021년 소하천(----골천) 주민 숙원사업	-	140,098	20211110	10,396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1115	-
20211228	2020년 ----강(수로이설 0지구) 재해복구사업	-	498,069	20220824	81,999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826	-
20220322	2022년 하천(----천) 주민숙원 사업	-	361,154	20220705	90,395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710	-
20220822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 (--0세천 0구) 응급복구공사	-	28,611	20221215	11,40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220	-
20210909	--어린이공원(버스킹공연장) 조성사업	-	444,724	20221004	49,478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005	-
20220323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검문소~----제방)	-	33,947	20221124	4,983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129	-
20210406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	74,191	20210723	46,472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727	-
20211217	2021년 --저수지 재난안전 사각지대 개선사업 시행	-	106,471	20221214	13,90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216	-
20220622	2022년 --면(--리 0000-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	-	123,783	20221222	4,946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227	-
20210329	2021년 임도신설사업(-----, --)	-	671,820	20211110	67,017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1114	-
20220620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	84,423	20220916	826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917	-
20200622	철원 ----공원(근대문화거리테마 공원)조성사업-전기(건축분야)	-	514,772	20220726	43,08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731	-
20201125	--산 -----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구조물)	-	1,176,090	20220727	34,15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730	-

최초 계약일	계약명	계약상 대자	최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준공일	발주부서
				변경 계약일	증액	사유		
20210826	----산 ----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전기)	-	41,692	20220328	28,037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331	-
20220503	2022 -----산 무장애 보행로 설치사업	-	304,319	20220830	104,051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831	-
20210705	-----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건축)	-	1,536,704	20220902	102,639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905	-
20220627	2022년 ----시장 노외주차장 조 성사업(전기)	-	35,682	20221027	5,308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031	-
20200928	도시재생 뉴딜사업(--정원) 조성사업	-	147,632	20210624	12,948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630	-
20201126	한탄강 -----길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1,011,494	20210817	96,474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820	-
20210304	--000호선(--0리) 보도설치 사업	-	456,229	20220429	12,19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430	-
20210329	2021년 생활환경개선사업(-- 0리 인도개설)	-	197,179	20210712	7,232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0716	-
20210817	(국경없는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공원 조성에 따른 철거공사	-	65,370	20211021	22,562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11022	-
20210927	(국경없는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르신 공동 홈 리모 델링사업(건축)	-	123,490	20220609	17,83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0612	-
20220223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247,691	20220930	6,130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	20221001	-

[일련번호: 17]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화강 ■■축제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철원군 ☁☁☁ 지방----- ●●●

② 철원군 ■■■(전 ☁☁☁) 지방----- ▲▲▲

내 용

철원군(☁☁☁)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화강의 자연환경과 ■■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화강 ■■축제 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화강 ■■축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내용	교부결정	총사업비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0	AAAA (000)	경연대회 운영, 행사장 시설장비, 관련 홍보 등	2020. 7.27.	50,000	-	50,000	-
2021	AAAA (000)		2021. 6.19.	90,000	-	90,000	-
2022	BBBB (000)		2022. 6.23.	300,000	-	300,000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공공기록물 관리 및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 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 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제32조의6, 「지방보조금법」(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충청도)은 [표 2]와 같이 2021년 시행한 본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2022. 1. 3.에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8개월이 지난 2022. 9. 5.에 접수일시를 적고 담당자와 결재자가 서명하여 지연 등록하였고,

뒤늦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2022. 9.26. 별다른 조치 없이 보조금을 확정하여 통지하였으나, 그마저도 보조사업자가 당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이미 지났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2020년과 2022년에 시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각각 52일, 45일 기한을 넘겨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검사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일자	정산 검사 완료	비 고
2020	AAAA (000)	2020. 7.27. ~2020. 9.30.	2021. 1.21.	52일	2021. 5.20.	
2021	AAAA (000)	2021. 6.28. ~2021.10.31.	2022. 1. 3.	3일	2022. 9.26.	실제 정산보고서 제출 8개월 경과 후 접수처리 (2022. 9. 5.)
2022	BBBB (000)	2022. 6.24. ~2022.10.31.	2023. 2.14.	45일	2023. 2.27.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³⁵⁾를 이용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³⁶⁾에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②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③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④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36)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①천재지변,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②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③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런데 철원군(충청북도)은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이를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³⁷⁾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³⁸⁾ 적용 시 총 4,22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 3] 보조사업자의 부적정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방법	부적정사항	계약업체 (소재지)	계약일자	비고
합 계		35,168					
2022	행사운영 물품 임차	19,336	수의계약	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사용	-	'22. 8. 7.	분할 계약
	행사운영 물품 임차	15,832			-	'22. 8. 7.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계획 변경 지도·감독 소홀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제32조의4, 제32조의5, 「지방보조금법」(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 제14조, 제16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³⁹⁾,

37)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38)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39) 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법」(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제출받으면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충청남도)은 [표 4]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식비에 대한 지출 목적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건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는데도 보완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보조사업자 부적정 지출 현황

(단위: 원)

연 도	정산 검사 부적정 확인 사항			
	항 목	부적정 사항	지 출 액	지출일자
2020	식비	사용 목적 불명	80,000	2020. 9.10.
	인건비	사업계획 임의 변경 사용 목적 및 근무 확인 증빙 미흡	350,000	2020.11.11.
2021	식비	사업계획 임의 변경 사용	65,000	2021. 9. 9.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 지방----- ●●●은 2021. 00. 00.부터 0000까지 □□□□로, 철원군 ☹☹☹(전 ☁☁☁) 지방----- ▲▲▲은 2021. 0. 0.부터 2022. 00. 00. 까지 □□□□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접수 등록하여 뒤늦게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없이 보조금을 그대로 확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해당 건이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검증이 불가능에도 보완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혼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2022 DMZ ■■■페스티벌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철원군 ■■■■(전 ☎☎☎) 지방----- ●●●

내 용

철원군(■■■)은 지역적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국제적 음악 행사육성을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2022 DMZ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2022 DMZ ■■■페스티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내용	교부결정	교부결정액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2	- (000)	무대 공연 및 행사 홍보 등	2022. 8.19.	500,000	250,000	250,000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⁴⁰⁾를 이용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⁴¹⁾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②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③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④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①천재지변,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②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③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이를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⁴²⁾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⁴³⁾ 적용 시 총 10,428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표 2] 보조사업자의 부적정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거래일자	위반 내역
			업체명	업종		
합 계	86,900					
행사장 현장운영 기획 및 진행 용역	20,000	수의계약	-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등	2022. 9.28.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단일 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체결
홍보마케팅 용역	9,900		-	경영 컨설팅, 전자상거래	2022.10.14.	
행사 현장 물품 임차	20,000		-	행사용품임대, 사무기기 구매대행	2022.10.24.	
행사 현장 경호 용역	17,000		-	경비업, 렌탈서비스, 행사대행	2022.10.24.	
행사장 전기 공사	20,000		-	행사 대행업, 행사용품 임대	2022.10.24.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42)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43)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범위, 근무시간 등 집행 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실적 또는 근무확인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그 집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정산검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건명	대상자	지출일자	지출액	비고
현장 부스 운영 인력비	-	2022. 9.28.	1,375,000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인력 인건비	-	2022.10.13.	154,720	과업내용,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인력 인건비	-	2022.10.13.	106,370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인력 인건비	-	2022.10.13.	96,700	과업내용,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인력 인건비	-	2022.10.13.	96,700	과업내용,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 전문스텝 인건비	-	2022.10.18.	773,600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 전문스텝 인건비	-	2022.10.18.	1,450,500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 전문스텝 인건비	-	2022.10.18.	483,500	과업내용,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 전문스텝 인건비	-	2022.10.18.	290,100	과업내용,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단기 전문스텝 인건비	-	2022.11. 1.	1,450,500	근무여부 증빙자료 미첨부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사용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

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⁴⁴⁾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4]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물품 구매 및 제작, 차량 임차 등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물품에 대한 검수 여부나 납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결의서에 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결재·날인과 결의 일자를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보조금 부적정 사용관리 현황

(단위: 원)

건명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액	비고
관람객 팔찌 제작	-	2022. 9.14.	2,248,5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검수 및 납품 관련 자료 미작성
일회용 방석 구매	-	2022. 9.23.	106,000	지출결의서 결의 일자 미작성
현수막제작	-	2022. 9.26.	6,703,4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검수 및 납품 관련 자료 미작성

- 44) 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명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액	비고
행사장 현장운영 기획 및 진행 용역	-	2022. 9.28.	20,00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행사장 내 신분별 비표 제작	-	2022. 9.29.	149,600	기안자, 결재자 서명·날인 누락
아티스트 수송용 차량 임차	-	2022. 9.29.	2,09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기안자, 결재자 서명·날인 누락
현수막 제작	-	2022.10.14.	8,761,5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검수 및 납품 관련 자료 미작성
행사 현장 물품 렌탈비	-	2022.10.24.	20,00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행사 현장 경호 인력	-	2022.10.24.	17,00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행사장 전기 공사	-	2022.10.24.	20,00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전 ●●●) 지방----- ●●●은 2020. 0. 0.부터 2022. 00. 00. 까지 □□□□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인건비 집행 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성립 증빙 자료를 갖춰 두지 않거나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제00회 철원 DMZ 국제평화■■■대회 개최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제00회 철원 DMZ 국제평화■■■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제00회 철원 DMZ 국제평화■■■대회 개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내용	교부결정	총사업비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2	- (000)	■■■대회 개최, 기념행사 등	2022. 8. 4.	368,722	-	260,000	108,722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⁴⁵⁾를 이용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⁴⁶⁾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②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③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④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46)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①천재지변,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②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③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이를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⁴⁷⁾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⁴⁸⁾ 적용 시 총 9,859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표 2] 보조사업자의 부적정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계약내용	계약 금액	계약업체		계약일자	위반 내역
		업체명(대표자)	종목		
합 계	82,157				
☐☐대회 홍보 용역	19,370	-	상품 종합 도매업, 기타 인쇄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022. 8. 1.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단일 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체결
행사운영물품 구입 (상장케이스 등)	1,546			2022. 8.29.	
현수막 구입	1,886			2022. 9. 2.	
홈페이지 관리용역	2,200			2022. 9. 2.	
☐☐코스운영 대행 요역	18,300	-	행사대행업, 광고기획, 경기용품임대, 전자상거래업 등	2022. 8.19.	
단체복 구입(행사)	1,500			2022. 9. 2.	
행사장 시설물 임차	9,650			2022. 9. 2.	
☐☐코스 및 행사장 물품 임차	11,088	- (000)	행사시설물 대여	2022. 8.22.	
단체복 구입(자원봉사자)	1,377	- (000)	광고대행, 의류 등	2022. 9. 2.	
음향장비 임차	10,520	- (000)	전시및행사대행, 음향, 특수효과 등	2022. 8.25.	
행사장 물품 임차	4,720	- (000)	행사용품 렌탈, 행사대행	2022. 9. 2.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47)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48)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2.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려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포함하여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금 확보 여부를 조사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아래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않고 교부 신청을 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 없이 교부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부담 예치 현황

사업연도	보조사업자(대표자)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부담금 예치	비고
2022	- (000)	2022. 8. 2.	2022. 8. 4.	2022. 8. 25.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 정산 지도·감독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표 3]과 같이 본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검사 현황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보조사업자)	지연 일자	정산 검사 완료일	비고
2022	- (000)	2022. 7. 1. ~ 2022.10.31.	2023. 1.26.	26일	2023. 2.17.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철원군 ○○○(전 ○○○○) 지방----- ●●●●

② 철원군 ○○○(전 ○○○○) 지방----- ▲▲▲

내 용

철원군(○○○)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전통주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2020년 전통주 산업기반확충 지원 사업”을 지원·추진 하였다.

[표 1]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신청일	보조금 지급 결정일	정산검사일 (정산서제출일)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0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 (제조설비, 향온항습기)	76,000	11,400	26,600	38,000	'20. 4. 6.	'20. 4. 8.	'21. 1. 26. (21. 1월 중)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문서 접수·등록 미실시

「사무관리규정」⁴⁹⁾ 제23조에 따르면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49) 2020년 당시 법률명이며, 현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21. 1.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사업자(AAAA)가 사업 정산을 위해 제출한 정산서(실적보고서 등) 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번호를 부여하는 등 문서를 등록·관리 했어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3. 4. 28. 현재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AAAA)가 제출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를(2021. 1월 중 제출) 기록물 등록대장(온나라)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사업내용 변경 및 이월 행정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및 철원군(●●●)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⁵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50) 용도의 사용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 31.)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AAAA)는 [표 2]과 같이 철원군(●●●)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출 후 '20년 12월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였고,

철원군(●●●)은 이에 대해 조사·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변경 승인 통보를 해주었으며, 사업이 회계연도 내 완료가 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월사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과)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 없이 임의로 이월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사업 내용 변경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교부결정액	실제 지출액	지출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합 계	76,000	76,000			
제조설비 구입	65,000	59,115 (감 5,885)	'20. 4월 ~ '21. 2월	'20. 12. 2.	'20. 12. 2.
향온향습기 설치	11,000	16,885 (증 5,885)	'20. 4. 27.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지출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 교부신청을 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시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철원군(●●●) 교부조건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⁵¹⁾(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로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후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확인 하지 않고 교부 하였으며,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또한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1)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

[표 3] 보조금 계좌이체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출일자	집행액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거래내용	지출처
	합계	75,725			
1	'20. 04. 15.	11,819	×	향온항습기 구입	-
2	'20. 04. 20.	3,300	×	스테인레스 발효용기 구입	-
3	'20. 04. 23.	3,276	×	스테인레스 발효용기 구입	-
4	'20. 04. 27.	836	×	돌로라 구입	-
5	'20. 04. 27.	5,065	×	향온항습기 구입	-
6	'20. 05. 04.	1,254	×	돌로라 구입	-
7	'20. 06. 08.	3,850	×	4구 낙차식 병입기 구입	-
8	'20. 06. 11.	4,532	×	스테인레스 발효용기 구입	-
9	'20. 06. 11.	2,860	×	전기보일러 구입	-
10	'20. 07. 30.	9,100	×	발효숙성조 구입	-
11	'20. 08. 12.	3,000	×	술덧이송펌프	-
12	'20. 11. 24.	9,586	×	규조토여과기 구입	-
13	'20. 12. 03.	4,661	×	스테인레스 발효통 구입	-
14	'20. 12. 04.	3,000	×	스테인레스 발효통 구입	-
15	'21. 02. 10.	9,586	×	규조토여과기 구입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 3. 30.)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⁵²⁾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민간의 자본형성이 교부 목적인 보조사업들에 대해 사업목적물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52)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표 4]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목적물인 자본 성격의 장비들에 대해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내역에 대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로부터 반기별 보고도 받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중요재산 관리 및 공시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대표자)	대당 취득가액	중요재산 관리 여부	공시 여부
	합계		43,580		
2020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	스테인레스 발효용기(20개)	AAAA (000)	226	×	×
	스테인레스 발효용기(30개)		218	×	×
	스테인레스 발효통(35개)		218	×	×
	돌로라(1대)		2,090	×	×
	전기보일러(1대)		2,860	×	×
	향온항습기(2대)		8,442	×	×
	발효숙성조(2대)		4,950	×	×
	술덧이송펌프(1대)		2,200	×	×
	규모토여과기(1대)		15,400	×	×
	미세여과포(15개)		46	×	×
	밸런스교반탱크(1대)		3,080	×	×
	4구 낙차식 병입기(1대)		3,850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전 ●●●) 지방----- ●●●은 2019. 0. 00.부터 2022. 0. 0.까지 □□□□로, 철원군 ●●● 지방----- ▲▲▲은 2020. 0. 00.부터 2021. 00. 00.까지 실무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를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을 한 뒤 사후 신청건에 대하여 조사·검토 없이 승인해 주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도(■■■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 예산을 이월하여 지급·사용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등 회계 처리 미흡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고 반기보고를 받아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강원특별자치도 시정 요구

제 목 축산농가 장비 지원 관리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에서는 축산산업의 발전 및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계란선별·포장처리 시설지원 사업 등 4개사업’을 지원·추진 하였다.

[표 1] 축산농가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교부신청일	보조금 지급 결정일	정산 검사일 (정산서 제출일)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계	647,668	7,500	108,000	296,500	235,668			
2020	계란선별·포장 처리시설	300,000	-	60,000	120,000	120,000	'20. 9. 20..	'20. 10. 20.	'20.10.19. ('20.10.12.)
2020	계란저온수송 차량지원	25,668	7,500	1,500	6,000	10,668	'20. 2. 27.	'20. 4. 24.	'20. 4.24. ('20. 4.21.)
2020	부존자원조사료 생산장비지원	232,000	-	33,000	121,000	78,000	'20. 5. 8. '20. 3. 2.	'20. 5. 28. '20. 6. 3.	'20. 5.28. ('20. 5.28). '20. 6. 3. ('20. 6. 2.)
2020	부존자원활용사료 제조 및 이용활성화지원 (TMR제조장비지원)	90,000	-	13,500	49,500	27,000	'20. 2. 28.	'20. 4. 14. '20. 9. 1.	'20. 4.13. ('20. 4.10.) '20. 9. 1. ('20. 8.31.)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

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철원군(☞☞☞)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0. 6. 10. 행정안전 예규 제114호) 제5장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1인 전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기타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사업자들이 [표 2] 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의 1인 전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⁵³⁾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하한율⁵⁴⁾을 적용하여 최대

79,40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계약명 (보조사업자)	계약금액	업체명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방법	정당계약	최대절감 가능금액
	총계	661,668						79,400
2020	계란선별·포장시설 (000)	120,000	-	'20. 3. 26.	선별기 (이상란, 파각란검출) 자외선살균기	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이용 / 1인견적 수의계약	지정정보 처리장치 이용 2인이상 견적 / 입찰	14,400
2020	계란선별·포장시설 (000)	180,000	-	'20. 6. 25.	선별기(파각란,혈란검출) 세척기			21,600
2020	계란저온수송차량 (000)	25,668	-	'20. 4. 9.	계란수송차량 (냉장탑차)			3,080
2020	부존자원조사료 생산장비(000)	72,000	-	'20. 5. 26.	원형결속기			8,640
2020	부존자원조사료생산 장비(0000000000)	80,000	-	'20. 5. 24.	원형결속기			9,600
2020	부존자원조사료 생산장비(000)	80,000	-	'20. 5. 24.	원형결속기			9,600
2020	부존자원활용사 료제조기(000)	50,000	-	'20. 3. 10.	발효사료기			6,000
2020	부존자원활용사 료제조기(000)	54,000	-	'20. 7. 28.	사료배합기			6,48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 3. 30.)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⁵⁵⁾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3)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이하 동일)

54)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55)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따라서 철원군(000)은 민간의 자본형성이 교부 목적인 보조사업들에 대해 사업목적물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000)은 [표 3]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목적물인 자본 성격의 장비들에 대해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내역에 대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로부터 반기별 보고도 받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중요재산 관리 및 공시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대표자)	대당 취득가액	중요재산 관리 여부	공시 여부
	합계		661,668		
계란선별·포장처리시설	계란선별·포장기	000	120,000	×	×
"	계란선별·포장기	000	180,000	×	×
계란저온수송차량지원	포터Ⅱ 냉장탑차 1톤	000	25,668	×	×
부존자원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원형결속기	000	72,000	×	×
"	원형결속기	0000000000	80,000	×	×
"	원형결속기	000	80,000	×	×
부존자원활용사료제조 및 이용활성화지원 (TMR제조장비지원)	발효사료기	000	50,000	×	×
"	사료배합기	000	54,000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고 반기보고를 받아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철원자전거 및 한탄강 걷기 대행진 지원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2021년 철원자전거 및 한탄강 걷기 대행진 사업”을 지원·추진 하였다.

[표 1] 2021년 철원자전거 및 한탄강 걷기 대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신청일	보조금 지급 결정일	보조금 실제 지급일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여부	정산검사일 (정산서제출일)
		군비					
2021	철원자전거 및 한탄강 걷기 대행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6,359	'21. 11. 11.	'21. 11. 11.	'21. 12. 15.	×	'21.12.7. ('21.12.6.)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금 지출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전 사용승인 없이 보조금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보조사업자(강원도민일보)에게 통지 하였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지출 했어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교부 통보를 보조사업자에게 하지 않았으며, [표 1]의 내역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전 사용승인 없이 교부 결정 통지전 임의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었다.

2. 보조금 지출 부적정

「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 제2조에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철원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라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 작성 후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원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의·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보조사업자(AAAA)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 등 정산서를 심사하면서 [표 2]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보조금 계좌이체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출일자	집행액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거래내용	지출처
	합계	6,359			
1	'21. 12. 16.	250	×	참가자 지급품(마스크)	-
2	'21. 12. 16.	809	×	현수막	-
3	'21. 12. 17.	2,000	×	참가자 지급품(우산)	-
4	'21. 12. 20.	3,300	×	신문광고료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前 ☎☎☎)

관 련 자 ① 철원군 ○○○(전 ☎☎☎)

지방------(전 지방-----) ●●●

② 철원군 ▨▨▨(전 ☎☎☎)

지방------(전 지방-----) ▲▲▲

내 용

철원군(○○○)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받은 156개소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미만(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라고 규정⁵⁶⁾하고 있고,

같은 법 8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농어촌민박의 규모,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위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는 [표 1]과 같이 상·하반기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 및 가스시설 등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으나

[표 1] 철원군 자체 농어촌민박사업 점검결과

구 분		문서번호	점검기간	점검결과(개소)			현지 시정내용
				개소수	이상없음	현지시정	
2020년	상반기	☎☎☎-00000 (2020.9.00.)	2020.7.10.~ 2020.7.31.	60	24	36	소방시설(소화기), 가스시설 등 현지 시정
	하반기	☎☎☎-0000 (2021.3.00.)	2021.1.18.~ 2021.2.26.	94	69	25	소방시설(소화기), 물놀이시설 등 현지 시정

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8-051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구 분		문서번호	점검기간	점검결과(개소)			현지 시정내용
				개소수	이상없음	현지시정	
2021년	상반기	농어촌-0000 (2021.7.0.) 농어촌-00000 (2021.8.0.)	2021.6.7.~ 2021.9.30.	53	53	-	-
	하반기	농어촌-0000 (2022.3.00.)	2021.12.13. ~2022.2.28.	72	72	-	-
2022년	상반기	농어촌-00000 (2022.9.00.)	2022.7.12.~ 2022.9.13.	72	69	3	소방시설, 가스시설 현지 시정
	하반기	농어촌-0000 (2023.3.0.)	2022.12.20. ~2023.2.24.	73	69	4	소방시설, 가스시설 현지 시정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종합감사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의 홈페이지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30개 민박이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민박사업자 미 거주(사업자 주거시설을 객실로 운영), 230㎡ 미만으로 개별 신고 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며 농어촌민박의 제도의 취지 및 사업의 목적성 등을 위배하였는데도 정기점검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농어촌민박 부적정 운영 현황

연번	신고현황			확인사항	
	민박명	신고일자	신고 객실	인터넷 등록객실	위반내역
1	-	2006.05.00	3	9	- 2008.9.4. 198.7㎡ 증축(n층) → 변경신고 안함 - 증축 면적 포함 총283.35㎡으로 민박기준 초과
2	-	2006.05.00	5	11	-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동 운영 중 1필지(-----읍 -----길 000) 내 민박기준 면적 초과
3	-	2006.05.00	4		
4	-	2007.11.00	4	5	- 건축물 대장상 방은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5	-	2014.10.00	4	9	- 홈페이지에 -----민박(000/소유자 000)과 함께 등재하여 운영 중 - 건축물 대장상 -----펜션 방 n실,-----민박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6	-	2008.10.00	2	3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7	-	2008.12.00	2	7	- 2012.05.29. 00㎡ 증축(--동_객실수 n개) → 변경 신고 안함 - 건물이 다르며 증축면적을 추가 할 경우 민박기준 초과 및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8	-	2009.01.00	6	8	- n동(--동 ~ --동)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 홈페이지상 별도건물(000) 미신고 n실 포함 운영 중

연번	신고현황			확인사항	
	민박명	신고일자	신고 객실	인터넷 등록객실	위반내역
9	-	2010.11.00	6	7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0	-	2015.01.00	6	8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창고를 객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박기준 초과함(245.66㎡) -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1	-	2012.11.00	3	7	- 건물 총 n개 건물 신고 - 2014.6.00. 28.5㎡ 증축(방n) → 변경신고 안함 -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2	-	2013.10.00	8	16	- ----- n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운영
13	-	2014.07.00	2	14	- ① -----(000) = -----n동 ② -----민박(000) = -----n동, ③ 민박신고 안된 -----색건물(-----n동) 확인 됨 - 홈페이지에 전체를 ----- n동, n동, n동 으로 운영 중
14	-	2016.07.00	5	17	- ① -----(000_방n개) ② -----(000_방n개) ③ -----(000_방n개) - 홈페이지에 -----, -----, -----을 함께 공동운영 중 이며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5	-	2016.11.00	4	5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6	-	2017.01.00	5	10	- 신고한 건물(n층) 대장 상 방 개수 n실 - 홈페이지상 올려진 민박은 미신고이며, n동 213.2㎡
17	-	2017.04.00	6	7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18	-	2017.04.00	3	7	- n동만 신고하였으며, 미신고 건물을 합치면 민박시설기준 초과(336.3㎡)
19	-	2017.06.00	4	13	-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고는 --동으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0	-	2017.07.00	4	5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1	-	2018.05.00	6	10	- 홈페이지상 ------(n~n), ------(n~n), n층--실(n)
22	-	2018.04.00	6	7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3	-	2018.05.00	3	5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4	-	2018.09.00	6	7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5	-	2019.07.00	5	6	- 건축물 대장상 방 n실로 사업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중
26	-	2020.01.00	4	12	- 홈페이지에 미신고 건물이 여러채 있음(--, --, --)
27	-	2022.01.00	4	8	- n층이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으나 민박시설로 이용 중
28	-	2006.05.00	6	10	- 각각 사업자신고 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 (소유자는 000으로 동일) ---(신고자 000), --- (신고자 000) 이나 홈페이지에 입금계좌는 소유자 000으로 되어 있음
29	-	2019.05.00	2		
30	-	2022.02.00	2		

※ 농어촌민박 사업자 홈페이지 확인 및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철원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⁵⁷⁾”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 알림”을 통하여 사업지침 및 지원제외 대상자⁵⁸⁾ 등을 철원군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철원군(●●●)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자 선정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규모,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는 [표 2]에서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표 3]와 같이 16개소를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보조사업자로 선정⁵⁹⁾하여 184,573천 원(도비 113,359, 군비 71,214)을 지원하였다.

57) (재원) 도비보조 / (지원) 시설환경 개·보수 / (도 담당부서) '18~'20년 : ■■■과, 21년부터 : ■■■과

58) ① 2020년 : ■■■과-000(2020.1.00.)호

- 제외대상 :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을 위반한 자,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② 2022년 : ■■■과-0000(2022.2.0.)호

- 제외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등

59)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현황

연도	신청	선정	미선정		비고
			미선정	미선정사유	
2020	53	48	5	농어촌민박사업 기준위반(4), 사업포기(1)	선정된 48개소 중 15개소는 부적정하게 운영 중
2022	12	11	1	공고일 기준 지원 받은지 3년미만	선정된 11개소 중 1개소는 부적정하게 운영 중

[표 3] 농어촌민박 부적정 운영사업자 보조금 지원현황('20년 ~ 현재)

연번	민박명	사업내용	사업자 선정일	사업비(천원)				비고 (위반사항)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16개소(20년 15개소, 22년 1개소)		241,918	113,359	71,214	57,345	
1	-	침대 교체, 불박이장 구입, 화장실 보수 및 페인트 공사	'21.3.25.	19,814	9,906	5,944	3,964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및 연면적 초과 등
2	-	싱크대 공사	'20.10.8.	8,140	3,750	2,250	2,140	
3	-	외부데크 교체공사	'20.6.4.	22,488	10,000	6,000	6,488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4	-	침대 및 전기레인지 교체, 에어컨 구입	'21.3.25.	9,273	4,636	2,782	1,855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5	-	싱크대 교체	'20.6.4.	4,631	2,316	1,389	926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6	-	벽지 교체, 내장공사	'20.11.11.	12,179	5,997	3,598	2,584	증축(면적초과) 등
7	-	창문 유리 및 방충망 설치, 데크도장, CCTV설치	'20.10.8.	10,000	5,000	3,000	2,000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8	-	빗물받이 및 데크공사	'20.10.8.	19,888	9,944	5,966	3,978	증축, 사업자 주거 시설 포함 운영 등
9	-	에어컨 설치 및 외부 보수 공사	'21.3.25.	8,173	4,013	2,407	1,753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10	-	도장 공사	'22.4.18.	11,000	3,000	5,000	3,000	미신고 건물포함 운영 등
11	-	외부도색 및 데크 칠, 처마 및 몰딩칠 공사	'20.6.4.	10,681	5,000	3,000	2,681	미신고 건물포함 운영 등
12	-	화장실, 계단, 도색 공사, 루바공사, 싱크대 교체 등	'20.6.4.	22,000	10,000	6,000	6,000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13	-	외벽도색, 싱크대 보수, 화장실 수리 공사 등	'20.10.8.	22,000	10,000	6,000	6,000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14	-	간판 제작·시공, 물품 구입 (소화기, 컴퓨터) 조명공사 등	'20.6.4.	20,034	9,989	5,993	4,052	사업자 주거시설 포함 운영 등
15	-	화장실 타일, 외부 도장 장판·도배시공, 물품구입 등	'21.3.25.	19,617	9,808	5,885	3,924	미신고 건물포함 운영 등
16	-	보일러, 화장실 보수, 도색, 마루 공사 등	'20.6.4.	22,000	10,000	6,000	6,000	학여울, 개여울과 집단화 운영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2020. 0. 0.부터 2022. 0. 00.까지 □□□□ 업무를 총괄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과)에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 요청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는 농업정책팀에서 전수조사하였고 농어촌민박은 표본을 선정하여(기존점검 제외 사업장 등) 읍·면에서 조사하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하였으나,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과)에서 첨부한 안전 관련 점검표에 의해서만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민박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어촌민박 사업기준 위반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농업정책팀장으로서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 ▲▲▲는 2018. 0. 00.부터 2021. 0. 00.까지 □□□□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과)에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 요청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는 □□□□에서 전수조사하였고 농어촌민박은 표본을 선정하여(기존점검 제외 사업장 등) □□□□에서 조사하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원군(●●●)는 강원특별자치도(■■■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하였으나,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과)에서 첨부한 안전 관련 점검표에 의해서만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민박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어촌민박 사업기준 위반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실무책임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관련규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포함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불법 전용농지 및 농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前 ㉮㉮㉮)

관 련 자 ① 철원군 ○○○(전 ㉮㉮㉮)

지방------(전 지방-----) ●●●

② 철원군 ㉮㉮㉮(전 ㉮㉮㉮)

지방----- ▲▲▲

내 용

철원군(○○○)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 소홀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 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

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는 [표 1]과 같이 불법전용농지 12필지 19,509㎡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및 원상회복 명령 이후,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고발,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 미조치 내역

(단위 : ㎡)

연번	최초 적발시점	농지 소재지	불법 면적	불법내용	원상회복 명령 등	원상회복 명령기한	비고
	합 계	8건(12필지)	19,509				
1	2019.4.00.	----읍 ----리 00-0, 00-0	424	단독주택	'21.8.22. 원상회복명령(4차)	2021.09.30.	미복구
2	2019.10.00.	----읍 ----리 00-0, 00-0	104	가설파이프구조(--숙소),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21.8.22. 원상회복명령(3차)	2021.09.30.	“
3	2020.9.00.	----읍 ----리 00-0, 00-0	286	콘크리트포장 및 컨테이너 적치	'21.8.23. 원상회복명령(4차)	2021.09.30.	“
4	2021.5.00.	----읍 ----리 000-00, 000-0	464	불법건축물 설치	'21.8.21. 원상회복명령(2차)	2021.09.30.	“
5	2022.5.00.	----면 ----리 000	1,648	농막면적 초과 및 바닥 포장(블록), 휴경	'22.5.10. 원상회복명령(1차)	2022.06.10.	“
6	2022.7.00.	----읍 ----리 000	1,111	폐기물 적치	'22.7.19. 원상회복명령(1차)	2022.08.23.	“
7	2022.9.0.	----읍 ----리 000	14,472	휴경	'22.9.16. 원상회복명령(1차)	2022.10.17.	“
8	2022.11.00.	----읍 ----리 000-0	1,000	휴경 및 타용도 컨테이너 설치	미통보	미통보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불법농막 실태조사 후 사후관리 소홀

「농지법」 제5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철원군(▨▨▨)는 강원특별자치도 ■■■과-00000(2021.7.00.)호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 지침 통보”에 의하여 불법농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철원군 ▨▨▨-00000(2021.11.00.)호에 따라 농막 실태조사 결과를 철원군 (현 〇〇〇)에 이관(통보)하며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였다.

따라서 철원군(〇〇〇)는 이관(통보) 받은 농지 내 불법 농막 28건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된 경우 조치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 종합감사기간 중 2021년 실태조사시 확인한 불법농막 28건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철원군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농막에 대한 원상회복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2021년 불법농막 실태조사 후 사후관리 미조치 내역

연번	최초 적발시점	농지 소재지	농막형태	농막 불법내용	농지 타용도 사용	원상회복 명령	비 고
1	2021. 8. ~ 11월 경	--읍 화지리 0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주차장	미통보	미복구
2	“	--읍 관전리 000-0	-	연면적 초과	콘크리트타설	“	“
3	“	--읍 월하리 000-0	-	연면적 초과	잔디식재, 정원	“	“
4	“	--읍 읍이리 00	-	-	웬스설치	“	“
5	“	--읍 장흥리 000-00	-	연면적 초과 (데크, 차양시설)		“	“
6	“	--읍 오지리 0000-0	-	연면적 초과		“	“
7	“	--읍 양지리 0000	-	연면적 초과		“	“
8	“	--면 자등리 00-0	-	연면적 초과		“	“
9	“	--면 자등리 000	-	-	잔디식재	“	“
10	“	--면 자등리 000-00	-	연면적 초과 (1동 추가설치)	진입로 등	“	“
11	“	--면 자등리 0000	-	연면적 초과 (데크)	정원 등	“	“
12	“	--면 자등리 0000-0	-	연면적 초과 (창고)	진입로 등	“	“

연번	최초 적발시점	농지 소재지	농막형태	농막 불법내용	농지 타용도 사용	원상회복 명령	비 고
13	“	--면 자등리 0000-0	-	연면적 초과 (차양시설)		“	“
14	“	--면 자등리 0000-0	-	연면적 초과 (창고)	외부창고	“	“
15	“	--면 자등리 0000-0	-	연면적 초과 (차양시설)	외부창고	“	“
16	“	--면 자등리 0000-00	-	연면적 초과 (외부 수도시설)	외부 창고 등	“	“
17	“	--면 자등리 0000-0	-	-	진입로 등	“	“
18	“	--면 자등리 0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등)	타설 등	“	“
19	“	--면 와수리 0000	-	연면적 초과 (차양시설 등)	외부수도 등	“	“
20	“	--면 잠곡리 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등)		“	“
21	“	--면 잠곡리 00-0	-	연면적 초과		“	“
22	“	--면 잠곡리 000-0	-	연면적 초과		“	“
23	“	--면 잠곡리 00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등)	판석, 잔디식재	“	“
24	“	--면 잠곡리 000	-	연면적 초과		“	“
25	“	--면 사곡리 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등)		“	“
26	“	--면 사곡리 000-0	-	연면적 초과		“	“
27	“	--면 사곡리 000	-	연면적 초과 (비가림 등)		“	“
28	“	--면 사곡리 000	-	연면적 초과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로 불법전용농지 업무가 2021. 9월 ▨▨▨에서 ▨▨▨(현 ○○○)로 이관됨에 따라 2021. 9. 00.부터 2022. 6. 00.까지 □□□ 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전용농지 5필지 2,926㎡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및 원상회복 명령 이후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 원상회복 명령, 고발,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에서 2021. 8월 ~ 11월 실태조사 후 2022. 11. 22.에 이관(통보) 받은 농지 내 불법 농막 28건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으로서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 ▲▲▲은 불법전용농지 업무가 2021. 9월 ▢▢▢에서 (현 ●●●)로 이관됨에 따라 2021. 9. 00.부터 2022. 9. 00.까지 □□□□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전용농지 6필지 4,037㎡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및 원상회복 명령 이후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 원상회복 명령, 고발,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에서 2021. 8월 ~ 11월 실태조사 후 2022. 11. 22.에 이관(통보) 받은 농지 내 불법 농막 28건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로서 원상회복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통해 농지로 신속하게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강원특별자치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징계대상자 철원군 ㉔㉔㉔(전 ▽▽▽) 지방-----



징 계 종 류 경징계

철원군(▽▽▽)은 건전한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부실 건설사업자 난입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의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실태조사를 하였다.

[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수)

등록기준/ 진행여부	2020년 ⁶⁰⁾				2021년 ⁶¹⁾				2022년 ⁶²⁾			
	완료				완료				검토중			
	대상	적합	부적합	미제출	대상	적합	부적합	미제출	대상	적합	부적합	미제출
계	14	13		1	7	7			19	15	2	2
기술인력	6	5		1					13	10	2	1
자 본 금	8	8							3	2		1
사 무 실					7	7			3	3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

6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971호(2020.10.21.)호로 철원군 통보

6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0865호(2021.12.20.)호로 철원군 통보

6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417호(2022.12.21.)호로 철원군 통보

전을 도모함에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기술 인력 등에 기준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이에「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건설행정정보시스템⁶³⁾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 된 것을 확인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6조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쳐 업종별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63)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위반협의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를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미보고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 제8의2호에 따르면 제81조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도 실태조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보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이퍼컴퍼니⁶⁴⁾ 등 부실 건설사업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0. 10. 21.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기술인력 미

64) 법인으로 설립과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

달이 의심되는 AAAA(이하 “해당업체” 라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2021. 1. 18.까지⁶⁵⁾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 실태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해당 업체는 기술 인력 미달이 의심됨에도 어떠한 조사 없이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업활동을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022. 12. 21.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본금 잠식, 기술 인력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사업자로 통보되어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되는 해당 업체에 대해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더라면 사전 퇴출하여 관내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실한 건설시장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원군(▽▽▽)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으로서 부실 업체 난입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여 건전한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아 법 기준을 준수하는 선량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본금 심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 나. ③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⁶⁶⁾’에 따라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65) 당초 제출기한은 2020. 12. 21.이었으나 해당 기간 제출하지 않아 2021. 1. 18. 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독촉하였다.

66)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 시 진단자(담당공무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설업관리규정」별지2호에 따라 규정한 지침서

실질 자본금은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라 매 연도 결산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선급금,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등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질 자본금이 해당 건설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충족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 후 처분 결과를 건설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0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 8개 건설사업자 중 7개 건설사업자를 적합으로 판정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감사 기간 자본금 심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BBBB 등 3개 건설사업자는 [표 2]와 같이 실질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2021. 2. 21.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기준 충족 확인’으로 입력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⁶⁷⁾를 받아야 하는 CCCC은 2021년 철원군에서 발주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2021. 4. 6. 도금액 127,051,000원에 계약하여 2021. 5. 8. 준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철원군(▽▽▽)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심사를 소홀히 하여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CCCC이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동종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들이 해당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67)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건설행정시스템에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시 2021. 2. 21.~2021. 8. 20.

[표 2] 2020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본금 심사 재검증 결과

(단위: 원)

구 분	BBBB	DDDD	CCCC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기준자본금	150,000,000	225,000,000	150,000,000
실질자본금 (A-B)	128,911,925 (자본금 미달)	183,704,059 (자본금 미달)	78,892,136 (자본금 미달)
실질자산 A	128,911,925	183,704,059	78,892,136
실질부채 B	-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㉔㉔㉔(전 ▽▽▽) 지방----- ●●●은 2020. 0. 0.부터 2022. 0. 00.까지 □□□□로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록, 처분 등의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2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실태조사 대상 AAAA이 관련 자료 제출 등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본금 심사를 함에 있어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미수수익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여 실질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여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건설사업자가 낙찰을 받게 하는 등 법 기준을 준수하는 선량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실태조사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본인에게만 부여된 □□□□을 이용하여 협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등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또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시 자본금 진단은「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는 자산을 제외하여 실질 자본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철원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건설사업자 목록

조사항목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업종명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6개업체)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8개업체)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시설물유지관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조경식재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붙임 2]

2021년 철원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건설사업자 목록

조사내용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업종명
사 무 실 등록기준 미 달 (7개업체)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시설물유지관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로 000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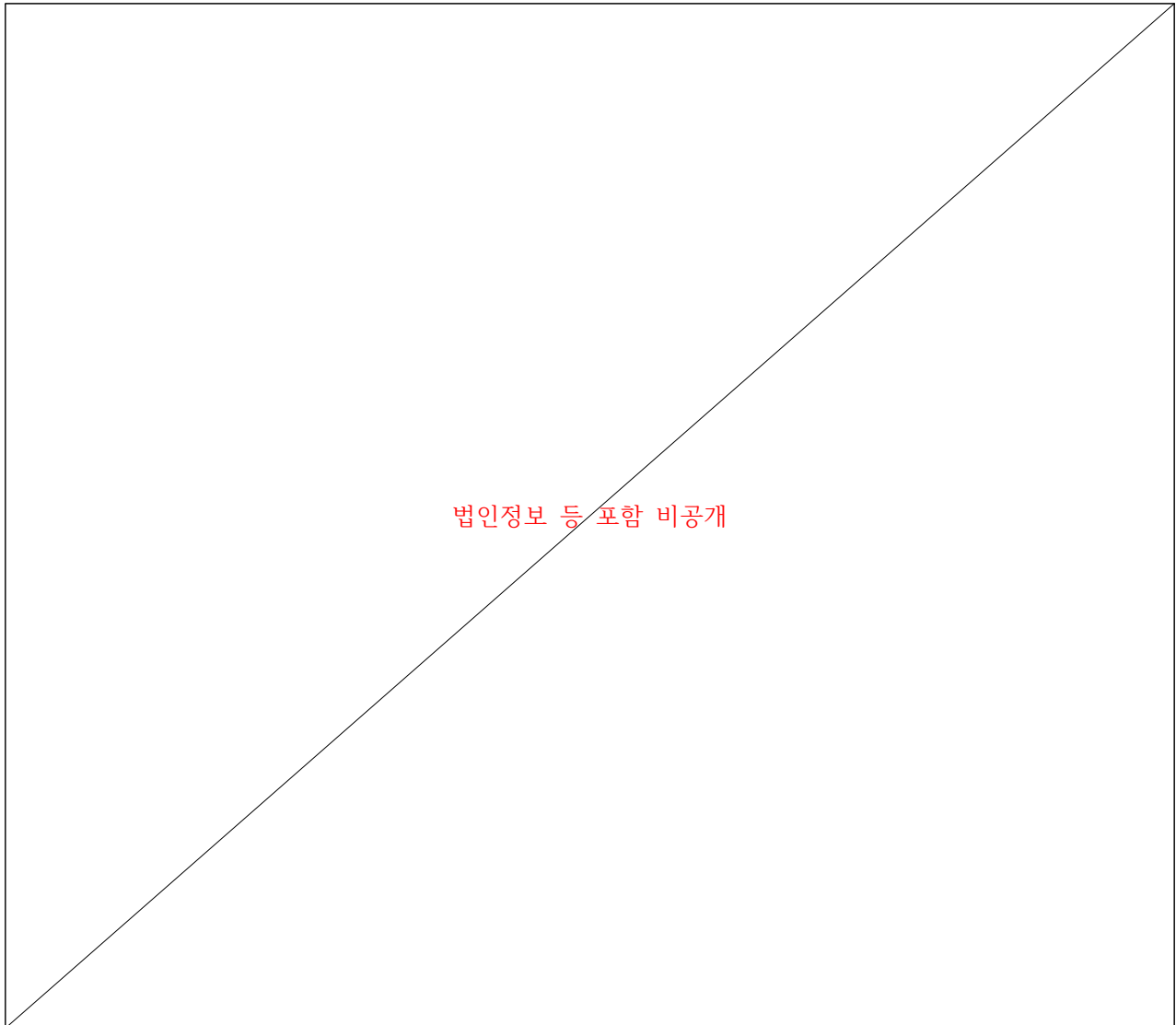
[붙임 3]

2022년 철원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건설사업자 목록

조사항목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업종명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 달 (13개업체)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페이퍼 컴퍼니 의 심 (3개업체) * 자본금과 사무실 모두 미달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	강원특별자치도 -----로 0000	철원군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붙임 4]

BBBB 계약현황(2021.4.0.)



[일련번호: 26]

강원특별자치도 통보(모범사례)

제 목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건설도시과

내 용

철원군(건설도시과)은 천연계곡인 한탄강의 수려한 주상절리의 협곡과 순담계곡에서 다채로운 절벽을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느낌있는 길!” 주상절리길을 아래와 같이 조성하였다.

- 위 치: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8번지 일원
- 사 업 량: 주상절리길 조성 L=3.6km
- 사 업 비: 24,815백만원(국 13,700, 도 1,761, 군 9,354)
- 사업기간: 2017. ~ 2021.



철원군(건설도시과)은 기존의 평화전망대, 제2땅굴, 고석정관광지로 고정되어 매년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문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표 하천인 한탄강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여 해당 문제를 극복하고자 2020년 한탄강 은하수교 준공을 시작으로 2021년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준공하여 2022년까지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인력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이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 주상절리 잔도길 조성

철원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아름다운 절경 및 주상절리를 근접 조망할 수 있는 순담계곡에서 드르니까지 연장 3.6km, 폭 1.5m의 잔도, 교량, 전망대, 보행데크 등 주상절리길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상절리길 조성 시 산악지형, 골프장 등으로 작업공간까지 접근로의 부재로 사업추진 어려움이 많았으며, 한탄강 건너편인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에 삭도를 세워 자재와 장비를 이송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업구간 내 작업로 안전난간 및 잔도 가시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안전확보 및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그림 1] 2023년도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 및 한국공간구조학회 작품상 수상

 2023년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 금상 수상 (강원일보, '23.04.09.)	 주상절리길 케이블 전망대 한국공간구조학회 작품상 수상 (강원도민일보, '23.04.18.)
---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잔도 및 전망대는 국내 최초 시도한 시설물로서 한탄강의 비경 및 주상절리를 근접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창의성·예술성·편의성 등 기술 공학적인 측면을 인정받아 [그림 1]과 같이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도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금상, 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작품상 등을 수상하였다.

2.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그동안 멀리서만 지켜보아야 했던 주상절리를 아찔한 높이의 절벽에서 뻗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개장은 전국의 트레킹 마니아들을 철원군으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했으며,

주말(토·일) 최대 3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약 1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주상절리길을 방문하였다.

[표 1] 주상절리길 방문객 현황 및 매출현황

(2023년 4월 18일 기준)

구 분	방문객	매출액	상품권
계	1,237,587명	9,147,348천 원	4,447,413천 원
2021년(11월,12월)	122,456명	733,560천 원	356,064천 원
2022년	964,124명	7,252,588천 원	3,527,111천 원
2023년	151,007명	1,161,200천 원	564,238천 원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입장료 10,000원에서 철원군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5,000원이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약 [표 1]과 같이 4,447,413천 원이 되었으며,

이는 철원군 관내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에 환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표 2]와 같이 총연장 3.6km의 잔도길과 매표소,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62명 등의 운영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표 2] 주상절리길 근무자 현황

(2023년 4월 18일 기준)

계	안전요원	매 표	입출입	주차요원	환경정비	화장실관리
62명	12명	8명	8명	22명	6명	6명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속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 매년 자체 예산을 세워 주상절리길 편의시설 확충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잔도, 인도교, 전망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철원소방서, 철원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및 협의를 추진하고 요청사항을 주상절리길에 적용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철원군은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안주하지 않고 포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2개소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햇불전망대를 차례로 준공하여 기존 관광지인 한탄강 은하수교, 고석정, 직탕폭포, 물윗길 트레킹을 연계한 한탄강 관광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철원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통보] 주상절리길을 조성하여 침체되어 있던 철원군 관광산업에 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청구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 ☼☼☼, ☼☼☼, ▣▣▣, ●●●, △△△, @@@,
ⓀⓀⓀ, ☆☆☆

내 용

철원군(▽▽▽ 등 10개 부서)은 2020. 3. 1.부터 2023. 12. 31.까지 공사금액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동송000호선(----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48건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6,279천 원을 정산·지급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⁶⁸⁾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기준」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97%까지 적용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 등 8개 부서)은 ‘동송000호선(---- 진입로) 도로확포장 사업’ 등 32건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안전관리 목적 외⁶⁹⁾ 사용한 약 39,522천 원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모두 인정하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부적정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⁷⁰⁾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하단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

69) 일반노무자 인건비 지급 및 스마트안전 장구 구입비 100% 인정(구입 및 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적용)

7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함

페이지를 통하여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 등 증빙자료의 적정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 △△△)은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서류를 제출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 되었는데도 검사 및 확인 없이 약 5,311천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철원군(▽▽▽ 등 6개 부서)은 ‘-----0리~-----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지출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 하였는데도 약 15,607천 원의 정산을 인정하였으며 유형별 전체 지적 내용은 [표]와 같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약 60,440천 원 상당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정산을 소홀히 하였고,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유형별 지적 현황

(단위: 건, 천 원)

연번	부서명	건수	집행액 (천원)	환수액 ①~③	유형별 지적내용			비고
					①목적 외 사용	②계산서 허위제출	③사진 재사용	
계		48	976,279	48/ 60,440	32/ 39,522	2/ 5,311	14/ 15,607	
1	-	6	144,204	6/ 10,168	5/ 9,293		1/ 875	
2	-	3	87,696	3/ 3,060	2/ 1,685		1/ 1,375	
3	-	2	12,085	2/ 1,741	2/ 1,741			
4	-	7	149,155	7/ 10,808	6/ 8,900	1/ 1,908		
5	-	2	13,712	2/ 663	1/ 527		1/ 136	
6	-	3	18,861	3/ 2,724	3/ 2,724			
7	-	14	228,250	14/ 17,982	8/ 9,610	1/ 3,403	5/ 4,969	
8	-	2	10,045	2/ 1,040			2/ 1,040	
9	-	4	52,326	4/ 7,212			4/ 7,212	

연번	부서명	건수	집행액 (천원)	환수액 ①~③	유형별 지적내용			비고
					①목적 외 사용	②계산서 허위제출	③사진 재사용	
10	-	5	259,945	5/ 5,042	5/ 5,042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39,522천 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안전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작성, 사진 재사용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20,918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3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회수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과태료)에 따른 처분 및「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회수, 자진신고 등의 조치에 불응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금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3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집행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정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계상액	집행액	부당 수령액 (환수금액)	비고
합 계			48건	1,144,388	976,279	60,440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31건	876,365	723,948	37,583	
-	동송000호선(----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추진중)	2019.06.00 ~ 2022.12.00	000	24,952	10,000	2,225	
	동서녹색평화도로(----- 간)개선사업(0공구)	2018.12.00 ~ 2020.12.00	000	37,851	38,456	3,103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선사업(추진중)	2015.07.00 ~ 2023.08.00	000	73,079	43,869	1,323	
	2020년 --도시계획도로(소로0-00호외) 개설사업	2020.03.00 ~ 2020.09.00	000	3,577	3,700	104	
	2020년 생활환경개선사업(-----0리 -----개설)	2020.03.00 ~ 2020.09.00	000	3,742	3,750	2,538	
-	----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	2021.08.00 ~ 2022.12.00	000	21,709	22,330	1,045	
	공예 태봉국 ---- 조성사업(-----(--,--,--)- 추진중	2020.06.00 ~ 2023.05.00	000	98,030	51,731	640	
-	----어린이공원(----공연장) 조성사업	2021.09.00 ~ 2022.10.00	000	9,979	10,020	401	
	----시가지 고도완화사업	2020.8.00 ~ 2020.12.00	000	2,169	2,065	1,340	
-	----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1.11.00 ~ 2022.6.00	000	11,817	12,902	1,562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2021.07.00 ~ 2022.09.00	000	31,132	30,491	2,270	
	----전통시장 노후환경 개선사업(--)	2021.08.00 ~ 2022.03.00	000	15,957	15,550	4,290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공사(--)	2020.08.00 ~ 2021.05.00	000	15,193	12,000	26	
	----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공사(--)	2019.07.00 ~ 2020.10.00	000	49,135	47,632	431	
	철원 ----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0-0단계)(--)	2019.06.00 ~ 진행중	000	17,060	8,010	321	
-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2021.04.00 ~ 2021.07.00	000	1,730	1,930	527	
-	2022년 ---- ----리 양수장	2022.04.00	000	6,355	6,415	858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계상액	집행액	부당 수령액 (환수금액)	비고
	설치공사	~ 2022.09.00					
	2022년 ---면 ---리(000-0번지 일원) ---시설 개보수사업	2022.03.00 ~ 2022.12.00	000	5,637	5,740	1,042	
	2022년 ---지구 ---배수로 개선사업(0차)-추진중	2022.10.00 ~ 추진중	000	15,356	6,706	824	
	--- ---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2017.07.00 ~ 2022.04.00	000	37,116	37,161	434	
	---읍 -----구역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진행중)	2018.11.00 ~ 2022.08.00	000	30,274	14,585	1,287	
	---하수처리구역(---0,---0) ----- 정비사업(---,---)	2017.05.00 ~ 2020.12.00	000	59,789	59,974	877	
	---하수처리구역(---,---) ----- 정비사업(---,---)	2017.06.00 ~ 2021.08.00	000	142,745	143,285	505	
	2020년 한탄강 ----지구(----뽕프장)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12.00	000	23,129	23,660	468	
	2020년 한탄강 ---지구(---리 상류)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11.00	000	20,402	20,456	605	
	2020년 한탄강 ---지구(---리 하류)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11.00	000	18,237	12,846	1,322	
	-----천(-----지구 하류)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11.00	000	13,208	9,502	673	
	2020년 ----- (수로이설0지구) 재해복구사업	2021.12.00 ~ 2022.11.00	000	14,998	11,700	1,568	
	2020년 ----- (수로이설2지구) 재해복구사업	2021.12.00 ~ 2022.08.00	000	13,453	11,500	1,609	
	2020년 지방하천(---0공구) 재해복구사업	2021.06.00 ~ 2022.12.00	000	29,698	30,312	2,393	
	소하천(경계천) 정비사업	2019.10.00 ~ 2023.07.00	000	28,856	15,670	972	
단순노무비 집행				4,904	4,940	1,939	
	2021년 지방상수도(-----) 지선연장사업	2021.09.00 ~ 2021.12.00	000	4,904	4,940	1,939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50,824	39,375	5,311	
	----- 일반산업단지 ---수도 도수관로설치공사	2020.05.00 ~ 2021.05.00	000	22,193	22,570	1,908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9.08.00 ~ 2021.06.00	000	28,631	16,805	3,403	
사진 재사용				212,295	208,016	15,607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계상액	집행액	부당 수령액 (환수금액)	비고
-	-----리~-----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018.03.00 ~ 2021.06.00	000	44,429	44,429	875	
-	2021년 한탄강 -----길(---교~-----) 재해복구사업	2021.07.00 ~ 2022.11.00	000	12,960	13,635	1,375	
-	-----리 -----장 조성사업	2020.04.00 ~ 2020.11.00	000	11,663	11,782	136	
-	----- 청사 신축공사(--)	2020.06.00 ~ 2021.08.00	000	6,652	6,652	520	
	----- 청사 신축공사(--)	2020.06.00 ~ 2021.05.00	000	3,393	3,393	520	
-	2020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0지구)	2021.09.00 ~ 2021.12.00	000	17,514	17,561	1,367	
	2022년 사방댐설치공사(--리, --리)	2022.04.00 ~ 2022.06.00	000	10,675	10,706	2,930	
	2022년 사방댐 설치공사(--지구)	2022.04.00 ~ 2022.06.00	000	14,814	15,286	591	
	2022년 -----산 임도 노폭확장사업	2022.06.00 ~ 2022.12.00	000	7,954	8,773	2,324	
-	-----천(-----지구 마을하류)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11.00	000	16,076	16,847	326	
	-----천(-----지구) 재해복구사업	2022.01.00 ~ 2022.09.00	000	12,563	12,675	1,459	
	2020년 --강 (수로이설0지구) 재해복구사업	2021.12.00 ~ 2022.08.00	000	15,682	15,809	407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0.11.00 ~ 2023.06.00	000	21,116	17,238	1,973	
	2021년 -----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2022.01.00 ~ 2022.12.00	000	16,804	13,230	804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일련번호: 28]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2020년 재해복구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철원군 △△△

지방-----



② 철원군 △△△

지방-----



내 용

철원군(△△△)은 2020. 7. 28 ~ 8. 11.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의 기능이 상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2020년 한탄강(AA교)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재해 복구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표 1]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건수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	144	'20~'23년	77,429	66,891	10,538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1) 또는 4)”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할 때에는 설계도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공사현장의 상태 등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 및 검토·확인 시 당해 계약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천 등 3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약 456백만 원 상당이 과다 계상 되어 감액이 요구되며,

또한 AA강 ----지구 등 10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준공하면서 폐기물 상차비 등의 정산을 소홀히 하여 58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전체적으로 [표 2]와 같이 총 514백만 원에 대하여 감액 및 회수하여야 하나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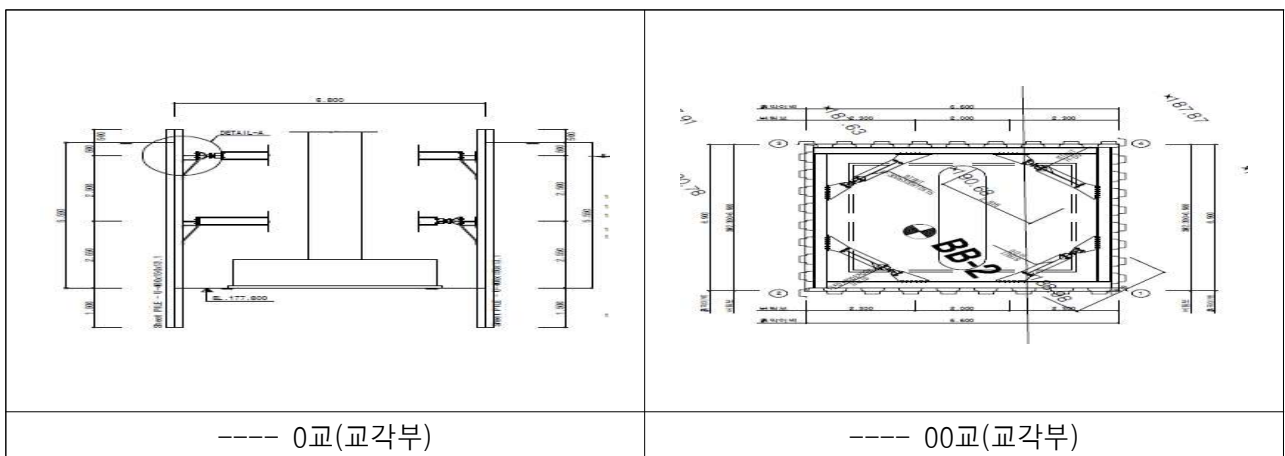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공사비	도급자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감액	환수	
계	13개소	-	-	11,141	-	-	456	58	
소계	3개소	-	-	21,978	-	-	456	0	
1	BB천(----0교)	교량 신설 (L=49.4m)	'21.12.00 ~ '23.8.00	1,259	000	교대 가시설 삭제 → 토공	99	-	공사중
2	BB천(----00교)	교량 신설 (L=48.8m)	'21.12.00 ~ '23.5.00	1,307	000	“	75	-	“
3	AA강(----교)	교량 신설 (L=134.0m)	'22.3.00 ~ '24.3.00	8,536	000	중복계상 등	282	-	“
소계	10개소			12,135			0	58	
1	AA강 ----지구 (----교 상류) 외 6	수로이설 L=953m 등	'21.12.00 ~ '22.12.00	9,882	000 외 6	폐기물 상차비 정산 소홀	-	48	준공
2	BB강 ----지구 (----) 외 2	제방 L=4,271m	'22.1.00 ~ '22.12.00	2,253	000 외 2	사토 처리비 정산 소홀	-	10	“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1. BB천(----0교, ----00교) 재해복구사업 공사비 과다계상

재해 복구계획에 따라 재가설이 확정된 ----0교, ----00교의 공사계획에 반영된 교각 구간의 가시설(Sheet-Pile)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가물막이로 대체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174백만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림] 용강교 교각 구간 가시설 반영 현황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2. 2020 AA강(----교) 재해복구사업 공사비 과다계상

----교의 거더 및 가설교량을 특정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하였음에도 [표 3]과 같이 관급자재대에 기술사용료 18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표 3] 조달수수료 반영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계				18,000	
조달수수료 1	강합성 거더	1식	7,247	7,248	
조달수수료 2	가설교량	1식	10,752	10,752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교면 포장을 위한 사급 자재비(개질아스콘)의 조사단가는 105천 원/ton임에도 설계내역에 [표 4]와 같이 264백만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표 4] 공사비 과다 계상 등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수 량	조사단가		설계 단가		차 액 (제경비 포함)	비 고
		단가	금액	과다 계상	금액		
개질아스콘	232ton	105	24,360	1,050	243,600	264,518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3. 2020 AA강, BB천 재해복구사업(10건) 사업비 정산 소홀

AA강, BB천 제방보축 등 하천 재해복구 사업 10개소(준공)에 대하여 설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폐기물 상차에 대한 수량 오기 등 약 58백만 원 상당에 대하여 과다 지급하였음에도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5] 재해복구사업 사업비 정산 소홀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공사비	도급자	지적사항	환수금액	비고
소계	10개소			12,135			58	
1	AA강 ----지구 (----리 상류)	제방축제 L=576m	'22.1.00 ~ '22.11.00	2,073	000	폐기물 상차비 정산 소홀	13	준공 (제경비제외)
2	AA강 ----지구 (----리 하류)	제방축제 L=602m	'22.1.00 ~ '22.11.00	1,365	000	“	15	“
3	AA강 ----지구 (-----)	제방축제 L=578m	'22.1.00 ~ '22.12.00	1,866	000	“	1	“
4	AA강 ----지구 (----교 하류)	제방축제 L=799m	'22.1.00 ~ '22.12.00	1,981	000	“	14	“
5	AA강 수로이설 (0지구)	수로이설 L=377m	'21.12.00 ~ '22.11.00	933	000	“	2	“
6	AA강 수로이설 (0지구)	수로이설 L=276m	'21.12.00 ~ '22.8.00	692	000	“	1	“
7	AA강 수로이설 (0지구)	수로이설 L=300m	'21.12.00 ~ '22.8.00	972	000	“	2	“
8	BB천 ----지구 (상류)	제방축제 L=149m	'22.1.00 ~ '22.6.00	204	000	사토 운반비 정산 소홀	6	“
9	BB천 ----지구 (마을하류)	제방축제 L=1001m	'22.1.00 ~ '22.11.00	1,199	000	“	1	“
10	BB천 ----지구 (----상류)	제방축제 L=856m	'22.1.00 ~ '22.11.00	850	000	“	3	“

※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 구성

△△△ 지방----- ●●●은 2022. 00. 00. 부터 0000까지, △△△ 지방
----- ▲▲▲은 2018. 0. 0.부터 2022. 0. 00.까지, 2022. 0. 0.부터 00까지 각각
□□□□, □□□□로서 2020 재해복구사업의 공사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였
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규칙」제29조 제2항에 따른 “혼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설계 오기 등으로 과다 계상된 용강천 외 2건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총 456백만 원 상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설계수량의 과다 계상 등에 따른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과다 지급된 한탄강 이길 지구 외 9건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58백만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철원 ■■■스튜디오 건립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① 철원군 △△△(전 ◇◇◇) 지방----- ●●●

② 철원군 ◇◇◇ 지방----- ▲▲▲

철원군(◇◇◇)은 콘텐츠산업 유치로 인한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드라마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철원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였다.

[사업개요]

- 위 치: 철원군 -----읍 -----리 00-0번지 일원(0회 위치변경)
- 사업기간: 2020. 4월 ~ 2021. 12월
- 사업내용: 방송통신시설(촬영소) 및 부대시설 신축 1식(연면적 4,290㎡)
 - 가변 스튜디오(3동), 후반작업시설(1동), 대형스튜디오(1동)
- 사 업 비: 132억 원(기금 42 / 도비 30 / 군비 60)

[위치도 및 조성(안)]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부적정

철원군(◇◇◇)은 ■■■스튜디오 건립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 시설기준 및 입지 분석 등 관계법령 검토를 포함하는 내용의 용역을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위: 천 원)

건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철원 ■■■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0.3.00. ~ 2020.6.00.	17,792	000	AAAA	00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본 연구용역⁷¹⁾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및 관계법령 등 검토근거를 토대로 부지 활용가능성과 접근성,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읍 ----리 000번지

71)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000페이지

- 후보지 1(----읍 ----리 000, 000-0), 후보지 2 (----읍 ----리 00-0)

일원을 촬영스튜디오 건립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철원군(◇◇◇)**이 건립 사업대상지로 추진한 지역은 [표 2]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상 ‘문화시설⁷²⁾’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법」에 따른 용도구분상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스튜디오는 입지(건축)가 불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표 2] 사업대상지 현황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부지면적(㎡)	지역 · 지구 등	소유자
①	-----읍 -----리	000	전	14,68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도로(접합), 문화시설(저축)	000
②	-----읍 -----리	000-0	답	2,355	계획관리지역, 문화시설	000
(사진1) 법인정보 등 포함 비공개 (사진2) 법인정보 등 포함 비공개						
① -----읍 -----리 000					② -----읍 -----리 000-0	

결과적으로 **철원군(◇◇◇)**은 해당부지에 대한 스튜디오 입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본 용역보고서를 납품(준공) 처리하여

7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향후 사업대상지의 수차례 변경으로 인한 착수지연 및 사업이 취소(포기)되는 등 실행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부적정

철원군(◇◇◇)은「철원 ■■■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후 내부 검토보고⁷³⁾를 통해 [표 3]과 같이 사업대상지로 ‘----읍 ----리 000-0번지’를 최종 결정하여 [표 4]와 같이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3] 사업대상지 변경 현황

구 분	위 치	검토결과	소유자
1 차 (당초)	----읍 ----리 00-0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촬영스튜디오 건립 불가 ※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약10억 원 소요)	000
2 차	----읍 ----리 000, 000	· 군관리계획상 ‘문화시설’ → 촬영스튜디오 건립 불가	000
3 차	----읍 ----리 000-00, 000-00	· 토지소유자 매각의사 없음	사유지
4 차 (최종)	----읍 ----리 000-0	· 계획관리지역 → 촬영스튜디오 건립 가능	사유지 (매입완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1.12.00. ~2022.9.00.	339,831	000	BBBBB	000	타절 기준일 (‘22.2.0.)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는 설계용역 추진 중 사업비 증가 및 스튜디오 건립 동수 감소 등이 예상됨을 사유로 (1차)현장실정보고⁷⁴⁾를 통해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2차)현장실정보고⁷⁵⁾를 거쳐 ①사업부지 선정 부적정(가용면적 절대부족), ②추정 공사비 증액(건축 52억 원, 토목 15억 원), ③영화진흥위원회로 부터 사업취소 통

73)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부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철원군 ◇◇◇-0000(2021.1.00.)]

74) 현장 실정보고서(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문서번호: 철원군 ◇◇◇-0000(2022.2.0.)]

75)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현장실정보고 [문서번호: 철원군 ◇◇◇-0000(2022.6.0.)]

보76) 등을 사유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타절준공 하기로 결정 하였다.

철원군(◇◇◇)은 본 사업착수 전 ■■■스튜디오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당시부터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표 5]와 같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7,792천 원 지출, 타절준공에 따른 설계용역비 120,641천 원 지출 등 총138,433천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었으며, 철원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철원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용역비 등 지출 및 타절준공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건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 고
			계약	타절정산	
	계		357,623	120,641	
1	철원 ■■■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0.3.00. ~2020.6.00.	17,792	-	타절준공 (2022.8.00.)
2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12.00. ~2022.04.00.	339,831	120,641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철원군 △△△(전 ◇◇◇) 지방----- ●●●은 2019. 0. 0.부터 2022. 0.00.까지 □□□□으로, ◇◇◇ 지방----- ▲▲▲는 2021. 0. 0.부터 0000까지 □□□□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76) 2020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 결정 취소 통보 [문서번호: 0000위원회 0000팀-000(2022.6.0.)]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추진 시 입지조건 및 경제성·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행,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원 ■■■스튜디오 건립 추진경위

- 2020. 2.00. : 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 금19,769천 원(착수일로부터 90일)
- 2020. 3. 0. : 철원■■■스튜디오 구축 사업계획(군수 결재)
- 2020. 3.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사업 신청(철원군 → 0000위원회)
- 2020. 4.00. : 2020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선정
- 2개소(00시, 철원군) *개소당 지원결정금액: 15억 원
- 2020. 5. : 2020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사업 약정 체결
- 000위원회 ↔ 철원군
- 2020. 7.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0. 9. 0. : 2020년 제0회 철원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 2020.11. 0. : '20년 제0차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조건부
- 2020. 1.00. : 부지 (변경)검토 보고(---읍 ---리: 000, 000-0 → 000-00, 000-00)
- 2020. 6.00. : 부지 (변경)검토 보고(---읍 ---리: 000-00, 000-00 → 000-0)
- 2021. 6. : 부지 매입
- 2021.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 : 경계측량
- 2022. 2. : 용역중지
- 2022. 6. 0. : 2020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 결정 취소 통보
(0000위원회→철원군)
- 2022. 6.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 정산 요청(철원군→용역사)
- 2022. 8.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 합의(철원군↔용역사)
- 2022. 8.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 정산 보고(부군수 결재)
- 2022. 9.00. : 기술용역 계약 해지(철원 ■■■스튜디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2. 9.00. : 철원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사업 포기서 제출(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30]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경관심의 및 조례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철원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철원군(▽▽▽)은「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철원군 경관형성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경관심의를 추진하였다.

[표 1] 경관심의 현황

(단위: 건)

순서	구분	안건번호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1	건축	2020-07-00	-----리 000000 아파트 신축	2020.07.08.	조건부	자문
2		2021-04-00	추억이 깃든 -----동 쌈지 쉼터 조성	2021.04.27.	원 안	자문
3		2021-04-00	----- 현장기념관 조성	2021.04.27.	원 안	자문
4	건축	2021-05-00	-----읍 -----리, -----리 아파트 신축	2021.06.04.	원 안	자문
5	건축	2021-06-00	0000 종합시설 신축	2021.07.14.	조건부	자문
6	건축	2020-11-00	--면 --리 공동주택 신축	2021.12.02	조건부	자문
7	건축	2020-11-00	철원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2021.12.02.	조건부	자문
8		2022-12-00	----- 골마울, -----리 경관협정마을	2022.12.09.	조건부	심의
9		2023-03-00	-----강 -----길 인도교 조성	2023.02.28.	원 안	자문
10		2023-03-00	철원군 도 경계 조형물 조성	2023.02.28.	원 안	자문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경관법」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철원군 경관형성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도로,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경관심의 운영지침, 국토부고시 제2020-657호(2020.9.21.)」에 따르면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경관 심의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과)는 2016. 3. 00. “2016년 강원도 경관심의 운영지침 알림⁷⁷⁾” 공문 시행을 통해 경관심의를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경관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2020. 4. 0.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요청 시기 준수” 공문⁷⁸⁾을 시행하여「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각 사업별 심의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철원군(▽▽▽)은「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를 위해 철원군만의 체계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며, 관련부서 등에 지속적으로 각 사업별 심의시기에 맞춰 경관심의를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철원군만의 체계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건축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관련 부서 안내(협조) 공문 미시행, 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 관리 소홀, 경관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6. 이후 경관 조례

77) 2016년 강원도 경관심의 운영지침 알림 [문서번호 : ■■■과-0000호(2016.3.00.)]

78)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요청 시기 준수 [문서번호 : ■■■과-0000호(2020.4.0.)]

개정도 하지 않는 등 경관심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하수처리구역(--0, --0) 하수관거 정비 등 23건의 사회기반 시설사업이 경관심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② ‘2022-▣▣▣-00000-00’ 등 29건의 공용건축물 조성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협의 처리 되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부적정

「경관법」제2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도로법」에 따른 도로,「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제2장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시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규모 및 시설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군수가 시행하는 하수도 및 도로개설⁷⁹⁾ 등 공사에 대한 경관심의를 이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사회기반시설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순서	구분	사업명	사업량	위 치	공사기간	사업비	소관부서
1	하수도	--하수처리구역(--0, --0) 하수관거 정비	오수관로 L=12.21km, 배수설비 929가구	--읍, --읍 일원	'17.05.00. ~ '20.12.00.	7,658	-
2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	오수관로	--읍 일원	'17.06.00.	16,109	-

79) 경관심의 운영지침 / 제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 2-1-1. 사회기반시설 사업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순서	구분	사업명	사업량	위 치	공사기간	사업비	소관부서
		하수관거 정비	L=26.53km, 배수설비 734가구		~ '21.08.00.		
3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0,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오수관로 L=13.27km, 배수설비 464가구	--읍 일원	'20.11.00. ~ '24.04.00.	12,137	-
4	하수도	--(--0,0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증설 Q=840m³/일	--면 --0리	'21.01.00. ~ '24.05.00.	11,049	-
5	하수도	--처리구역(--0리) 하수관로 정비	오수관로 L=1.86km, 배수설비 33가구	--면 --0리	'22.09.00. ~ '24.01.00.	1,488	-
6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소가시설 설치 49톤/일	--읍 --리 000	'21~'24	24,941	-
7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원화시설 20톤/일	--읍 --리 000	'19. 06.00. ~ '20.08.00	3,496	-
8	도로	철원 ---도로(000,000호선)개설 (-----촌)	도로확포장 L=2.2km, B=8~12m	--읍 --리 000-0번지	'22.06.00 ~ '23.06.00	7,000	-
9	단지	----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	마을조성 61,334m²	--읍 --리 0000번지	'22.01.00 ~ '23.08.00	17,130	-
10	공공청사	---- 청사 신축	연면적 1,666.48m²	--읍 --리 000	'20.06.00 ~ '21.08.00	4,794	-
11	공공청사	---- 복합청사 신축	연면적 1,795.68m²	--면 --리 000-0 외0필지	'23.10. ~ '24.12.	8,205	-
12	도로	--000호선(--진입로) 도로확포장	도로확포장 L=2.5km, B=8m	--읍 --리 000	'19.06.00. ~ '22.12.00.	4,001	-
13	도로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	도로확포장 L=2.8km, B=8~9.5m	--읍 --리 000	'16.06.00. ~ '20.08.00.	5,706	-
14	도로	---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도로확포장 L=3.0km, B=20m	--읍 --리 0000	'18.06.00. ~ '22.10.00.	13,947	-
15	도로	--0리---리간 도로확포장	도로확포장 L=0.9km, 교량 1개소	--읍 --리 0-0	'18.03.00. ~ '21.06.00.	6,770	-
16	도로	--000호선(---)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L=0.4km, 교량 1개소	--면 --리 000-0	'19.08.00. ~ '21.10.00.	5,416	-
17	도로	--000호선(---) 도로개설(0공구)	도로개설 L=2.4km, B=9.35m, 회전교차로1개소	--면 --리 0000-00	'22.02.00. ~ '23.06.00.	2,248	-
18	도로	--000호선(--- 진입로) 도로확포장	도로개설 L=0.95km, B=8m	--읍 --리 000-0	'19.08.00. ~ '22.03.00.	2,504	-
19	도로	----길(---) 조성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면 --리 산000	'19.03.00. ~ '20.05.00.	4,153	-
20	도로	----길(---) 조성(0공구)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면 --리 000-00	'21.03.00. ~ '22.07.00.	2,320	-
21	도로	--면 --생활공간 진입도로 개설	도로확포장 L=0.3km, 교량 1개소	--면 --리 0000-0	'20.02.00. ~ '21.09.00.	4,001	-
22	도로	-----도로 (---간)개선(0공구)	도로확포장 L=2.2km, B=13m	--면 --리 산00-0	'18.12.00. ~ '20.12.00.	3,983	-
23	도로	-----도로 (---간)개선	도로확포장 L=1.1km, B=13m	--면 --리 000	'15.07.00. ~ '23.08.00.	6,760	-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부적정

「경관법」제28조에 따르면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제4장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기는「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2023. 4. 28. 감사일 현재까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붙임]의 ‘시군 경관조례 현황’ 과 같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계획에 따른 경관 측면의 적정성 검토와 권역별 특색을 부여한 시가지 경관계획에 관한 검토 없이 [표 3]과 같이 29건의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협의를 하였다.

[표 3] 철원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현황

구분	허가번호	대지위치	연면적(㎡)	허가일	주용도
1	2022-▣▣▣-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237.52	2022.10.26.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22-▣▣▣-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148.2	2022.10.26.	노유자시설
3	2022-▣▣▣-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369.95	2022.10.26.	제1종근린생활시설
4	2022-▣▣▣-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399.01	2022.09.28.	제1종근린생활시설
5	2022-▣▣▣-공용건축물-00	--면 --리 000-0	568.32	2022.09.13.	제2종근린생활시설
6	2022-▣▣▣-협의건축물-00	--면 --리 000-00 외0필지	642.7	2022.07.14.	공동주택
7	2022-▣▣▣-협의건축물-00	--읍 --리 000	1,364.67	2022.07.06.	자원순환관련시설
8	2022-▣▣▣-협의건축물-00	--면 --리 000-0 외0필지	892.1	2022.05.09.	제1종근린생활시설
9	2022-▣▣▣-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84.58	2022.01.13.	관광휴게시설
10	2021-▣▣▣-협의건축물-00	--읍 --리 000 외0필지	293.927	2021.11.04.	문화및집회시설
11	2021-▣▣▣-협의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965.56	2021.09.03.	운수시설
12	2021-▣▣▣-협의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541.06	2021.08.24.	제2종근린생활시설
13	2021-▣▣▣-공용건축물-00	--면 --리 0000-00 외0필지	1,649.34	2021.08.17.	자동차관련시설
14	2021-▣▣▣-협의건축물-00	--면 --리 000	2,797.22	2021.08.11.	제1종근린생활시설
15	2021-▣▣▣-협의건축물-00	--면 --리 000 외0필지	2,649.09	2021.07.12.	노유자시설

구분	허가번호	대지위치	연면적(㎡)	허가일	주용도
16	2021-☐☐☐☐-공용건축물-00	--면 --리 000-0 외0필지	1,125.16	2021.06.22.	자원순환관련시설
17	2021-☐☐☐☐-공용건축물-00	--읍 --리 00-0	1,568.50	2021.06.09.	교육연구시설
18	2021-☐☐☐☐-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257.56	2021.03.08.	단독주택
19	2020-☐☐☐☐-협약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1,075.03	2020.10.28.	문화및집회시설
20	2020-☐☐☐☐-협약건축물-00	--읍 --리 000-00 외0필지	808.11	2020.09.11.	문화및집회시설
21	2020-☐☐☐☐-협약건축물-00	--읍 --리 000 외0필지	493.91	2020.09.01.	창고시설
22	2020-☐☐☐☐-협약건축물-00	--읍 --리 000-0 외0필지	882.88	2020.08.21.	제2종근린생활시설
23	2020-☐☐☐☐-협약건축물-00	--읍 --리 000	8,860.77	2020.07.10.	수련시설
24	2020-☐☐☐☐-공용건축물-00	--읍 --리 산 60 외0필지	418.60	2020.05.2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5	2020-☐☐☐☐-공용건축물-00	--면 --리 1362-5 외0필지	1,311.75	2020.04.22.	자원순환관련시설
26	2020-☐☐☐☐-협약건축물-00	--면 --리 1292-8 외0필지	218.58	2020.04.01.	제2종근린생활시설
27	2020-☐☐☐☐-공용건축물-00	--읍 --리 451 외00필지	1,774.29	2020.04.01.	교육연구시설
28	2020-☐☐☐☐-공용건축물-00	--읍 --리 2511 외0필지	3,061.42	2020.03.12.	제1종근린생활시설
29	2020-☐☐☐☐-공용건축물-00	--읍 --리 0000	2,208.16	2020.03.05.	공동주택

※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시정] 「경관법」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원군 경관형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사회기반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심의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 경관조례 현황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춘천	제1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와 같다.											
	<table><tr><th>구 분</th><th>심의 대상</th></tr><tr><td>1. 경 관지구의 건축물</td><td>「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td></tr><tr><td>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td><td rowspan="2">가. 지상3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td></tr><tr><td>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td></tr><tr><td>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td><td>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td></tr><tr><td>5. 그 밖의 건축물</td><td>가. 지상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td></tr></table>	구 분	심의 대상	1. 경 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가. 지상3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 그 밖의 건축물	가. 지상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구 분	심의 대상										
	1. 경 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가. 지상3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 그 밖의 건축물	가. 지상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비고 : 위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이 증축됨으로써 심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이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도 높이 또는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원주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table><tr><td>「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받는 연면적 330㎡ 이상인 건축물 중 신축, 기존 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 [비고] “연면적”이란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는 건축물의 합계를 말한다. 증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td></tr></table>	「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받는 연면적 330㎡ 이상인 건축물 중 신축, 기존 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 [비고] “연면적”이란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는 건축물의 합계를 말한다. 증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받는 연면적 330㎡ 이상인 건축물 중 신축, 기존 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전체 변경, 증축 [비고] “연면적”이란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는 건축물의 합계를 말한다. 증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table><tr><td>「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나. 7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라.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마. <삭제> 2019.01.11.</td></tr></table>	「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나. 7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라.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마. <삭제> 2019.01.11.										
「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나. 7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라.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마. <삭제> 2019.0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강릉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동해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구 분	심 의 대 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가.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경우:3층 이상의 건축물 나. 도로폭 15미터 미만인 경우 : 2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 8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	가. 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가.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가. 지상 9층 이상의 건축물 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 중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비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증축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이 심의기준을 초과할 경우와 증축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라도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 「동해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태백	<table><tr><th>분 류</th><th>대 상 건 축 물</th></tr><tr><td>공공건축물</td><td>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td></tr></table>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포함) 4. 미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속초						
삼척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 이상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단, 연면적 10분의 1 이하의 증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 외장디자인
홍천	제1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홍천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 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횡성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영월	제1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10층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5. 다른 법령을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
평창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4. 연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5.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정선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을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철원	제17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 군수는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천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다. 3층 이하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양구	제22조(위원회의 기능 및 경관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기타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60조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인제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대 상 건 축 물</th></tr> </thead> <tbody> <tr> <td>공공건축물</td><td> 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td></tr> </tbody> </table>	분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분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우체국 등 포함한다)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고성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군	시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양양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3층 이하의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4.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